

| 기본과제 2010-02 |

충북지역 사회적기업 현황 및 육성방안

A Study on the Promotion Strategies of Social Enterprise
in Chungbuk

2010



충북개발연구원
Chungbuk Research Institute

◆ 연구책임

함창모 · 산업경제연구부 연구위원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본원 및 충청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해당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지역주민을 고용하여 제공하는 구조로써 사회적기업 육성은 2000년대 이후 정부 노동정책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어 왔으며, 2010년 7월 현재 인증된 353개의 사회적기업을 통해 약 1만3천여명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민 일자리창출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충북지역의 경우에도 2010년 7월 현재 18개의 인증 사회적기업을 통해 600여명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차원에서 사회서비스 확대 및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한 기대를 고조시키고는 있으나,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정부의 지원이 단절된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소멸하는 현상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사회적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최근 충청북도가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2015년까지 사회적기업 100개를 육성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발표하여 지자체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에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 과제는 충북지역 사회적기업 현황 및 현안문제를 진단하고 사회적기업 현장의 정책수요를 분석하여 지역내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제도적 기반 확대, 명확한 비전과 목표 설정, 충북 특화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체계 시스템화, 지역사회 인식 개선 및 참여문화 조성, 사회적기업 내·외부 경쟁력 강화 및 전문성 제고, 유관기관 통합형 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요 정책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충북지역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수립 및 수요 맞춤형 지원

시책 마련을 위한 정책적 의사결정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과제의 심의과정에 참여하여 고견을 주신 한국고용정보원 박가열 박사, (사)일하는공동체 박종효 대표, 청주고용센터 최원호 주무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2010년 12월

충북개발연구원장 정 낙 형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충북지역 사회적기업 현황 및 경쟁력 수준에 대한 진단과 정책수요 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회적기업 육성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서민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서비스 확대를 통한 경제공동체 구축의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경제사회적 가치 등 이론적 배경과 함께 국내외 정책동향을 정리하였으며, 충북지역 사회적기업의 제도적 기반, 현황, 경쟁력 수준을 진단하였다. 이에 추가하여 지역내 사회적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정책지원 수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들을 대상으로 정책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충북지역 (예비)사회적기업 현황과 정책지원 수요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0년 현재 충북지역에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18개와 예비사회적기업 21개를 포함하여 총 39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소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952명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지역내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인원 비중에 있어서도 전체 근로자의 53%를 상회하고 있어 서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지역에의 집중현상과 조례제정과 같은 제도적 기반 미흡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도내 12개 시군 중 7개 시군에만 사회적기업이 분포되어 있으며, 사회적기업의 68.5%, 고용인원의 77%가 청주, 청원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확충과 함께 기초 지자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공동 노력을 통해 도내 전 지역으로 사회적기업을 확산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타, 업종별 현황에서는 환경, 사회복지, 기타(제조 등)의 업종에 속한 사회적기업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문화예술, 농업 및 산림보전, 교육 등 다양한 업종의 사회적기업 발굴도 필요한 실정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수요조사에서는 재정지원, 판로개척(공공기관 위탁사업, 우선구매

등),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사업성 분석 등 사회적기업의 시장 진입 및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사업아이템 발굴 등에서 정책지원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본 과제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내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명확한 비전 및 목표 설정, 충북 특화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체계 선진화, 도민들의 인식개선 및 사회적기업 친화적 문화와 환경 조성, 사회적기업의 대내외 경쟁력 강화와 자립화 기반 확충, 통합적 네트워크 구축 및 파트너십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목 차

제1장 서론	3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5
제2장 이론적 배경	9
1. 사회적기업의 등장 배경	9
2. 사회적기업의 의의	11
3. 선진국의 사회적기업 정책	15
4.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20
제3장 충북지역 사회적기업 현황	29
1.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현황	29
2. 충북지역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33
3. 충북지역 사회적기업 육성기반	39
4. 충북지역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분석	44
제4장 충북지역 사회적기업 정책수요 분석	49
1. 정책수요조사 개요	49
2. 사회적기업 정책수요 분석	50
3. 예비사회적기업 정책수요 분석	59
4.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정책수요 비교 분석	68

5. 면담조사에 따른 정책수요	74
제V장 결론	79
1. 요약 및 시사점	79
2. 사회적기업 육성 방안	84
[참고문헌]	90
[부 록]	93
ABSTRACT	119

표목차

〈표 1〉 사회적기업의 기준(EMES)	12
〈표 2〉 유럽형과 미국형 사회적기업의 비교	16
〈표 3〉 주요 국가별 사회적기업 특성 비교	19
〈표 4〉 사회적기업 육성 관계 법령	21
〈표 5〉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23
〈표 6〉 취약계층의 범위	24
〈표 7〉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	25
〈표 8〉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현황(2010년)	26
〈표 9〉 인증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	30
〈표 10〉 사회적목적 유형별 현황	31
〈표 11〉 인증사회적기업의 업종 유형	31
〈표 12〉 사회적기업의 유급근로자 현황	32
〈표 13〉 충북지역 (예비)사회적기업 및 근로자 현황	33
〈표 14〉 충북 사회적기업 조직형태별 현황	35
〈표 15〉 예비사회적기업 업종 현황	37
〈표 16〉 충북 사회적기업 유급근로자 현황	38
〈표 17〉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 현황	38
〈표 18〉 충북지역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현황	40
〈표 19〉 충북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구성 현황	41
〈표 20〉 충북지역 자활공동체 시군별 분포 현황	42
〈표 21〉 자활공동체 업종별 현황	43

〈표 22〉 자활공동체 규모별 현황	44
〈표 23〉 정책수요조사 개요	49
〈표 24〉 사회적기업 참여근로자 현황	50
〈표 25〉 직전연도 경영성과	50
〈표 26〉 예비사회적기업 고용 현황	60
〈표 27〉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원받고 있는 자원	62
〈표 28〉 사회적기업 전환 사유	64
[부표 1] 주요 선진국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비교	95
[부표 2] 주요 선진국 분야별 사회적기업 사례	96
[부표 3] 충북지역 사회적기업 정책수요조사 설문지	97
[부표 4] 충북지역 예비사회적기업 정책수요조사 설문지	107

그림목차

〈그림 1〉 연구수행체계	6
〈그림 2〉 사회적기업의 성격	11
〈그림 3〉 사회적기업의 역할(가치)	15
〈그림 4〉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비전체계	22
〈그림 5〉 국내 인증 사회적기업 분포	29
〈그림 6〉 충북지역 (예비)사회적기업 분포 및 고용 현황	34
〈그림 7〉 사회적목적 유형별 현황	35
〈그림 8〉 충북지역 사회적기업 업종별 현황	36
〈그림 9〉 사회적기업 전환 사유	51
〈그림 10〉 사회적기업 전환 후의 대내외적 효과	52
〈그림 11〉 사회적기업 인증에 따른 만족도	53
〈그림 12〉 사회적기업 지원항목별 만족도	54
〈그림 13〉 충북지역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수준	55
〈그림 14〉 충북지역 사회적기업의 강점과 약점	56
〈그림 19〉 예비사회적기업의 창업연도 분포	59
〈그림 20〉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만족도	62
〈그림 21〉 사회적기업 전환 계획 및 자립 필요기간	64
〈그림 22〉 사회적기업 전환 저해요인	65
〈그림 23〉 사회적기업 전환에 따른 지원내용 인지여부	66
〈그림 28〉 고용현황 비교 분석	68
〈그림 29〉 지원자원 만족도 비교 분석	69

〈그림 30〉 정책지원 수요 비교 분석	70
〈그림 31〉 컨설팅 지원 수요 비교 분석	71
〈그림 32〉 컨설팅 지원방식 선호도 비교 분석	71
〈그림 33〉 네트워크 필요 분야 비교 분석	72
〈그림 34〉 네트워크 구축형태 선호도 비교 분석	73
〈그림 35〉 프로보노 수요분야 비교 분석	74

제 1 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I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로 인한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하였던 1990년 말, 실업극복을 위한 다양한 논의과정에서 유럽의 사회적 일자리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례가 처음으로 소개 되었다. 당시 이러한 개념에 기초하여 공공구호적 성격의 공공근로사업이 새로운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자활사업의 내용과 조직형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후 외환위기를 극복한 2000년대 초반, 사회적일자리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논의는 산업구조 변화 및 고용창출과 연계되어 그 범위가 확장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증가 하게 될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적일자리 및 사회적기업의 육성이 필요하고, 이러한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에서 그 지역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역민들을 고용하여 제공하는 구조로서 지역사회의 고용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후 사회적일자리 및 사회적 기업 육성은 정부 노동정책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으며, 고용노동부의 주관으로 2003년부터 사회적일자리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그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재정지원 중단에 따른 사업의 지속성 단절이라는 구조적 문제점을 노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회적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계속기업 형태로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2007년 1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하였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와 연계된 일자리 창출의 주요전략으로 2012년까지 1천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다.

2010년 7월 현재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전국적으로 353개에 이르고 있으며, 약 1만3천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일자리창출 정책목표에서는 어느 정

도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충북지역의 경우에도 2007년 3개 기업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0년 7월 현재 18개의 인증 사회적 기업에서 600여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차원에서 사회서비스 확대 및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한 기대를 고조시켜 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계속기업으로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정부의 지원이 단절된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소멸하는 현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 신문에 따르면 충북지역 일부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도 정부의 강화된 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중 73%에 해당하는 인력이 재고용되지 못하고 실업자로 전락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사회적 기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최근 충청북도가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2015년까지 사회적 기업 100개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여 지자체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에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의 사회적기업 육성 의지에 따른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의 정책적 지원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 특수성과 연계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충북지역 사회적기업의 현황 및 현안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기업 육성 방향과 지자체의 역할 및 지원정책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지역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매우 필요한 과제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배경을 기초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기업의 개념, 역할, 경제·사회적 가치 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정부의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에 대해 정리해 봄으로써 지역에서의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을 재검토한다. 둘째, 충북지역의 사회적 기업 현황을 전국 또는 타지자체와 비교하여 충북지역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수준과 현안문제를 분석한다. 셋째, 충북지역 (예비)사회적기업의 애로사항과 정책수요를 조사하여 지역 차원에서의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방향을 도출한다. 넷째, 충북지역 (예비)사회적기업 유관단체간의 네트워크 구축 모형과 분야별 지원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충청북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틀을 제공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충북지역 사회적 기업 현황 및 실태, 정책적 지원수요 분석,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등으로 구성된다.

첫째,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를 위해서는 선행연구 등의 문헌조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등장배경, 사회적기업의 발전과정, 사회적기업의 경제사회적 가치 등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며, 정부 및 지자체 지원정책에 대한 자료 수집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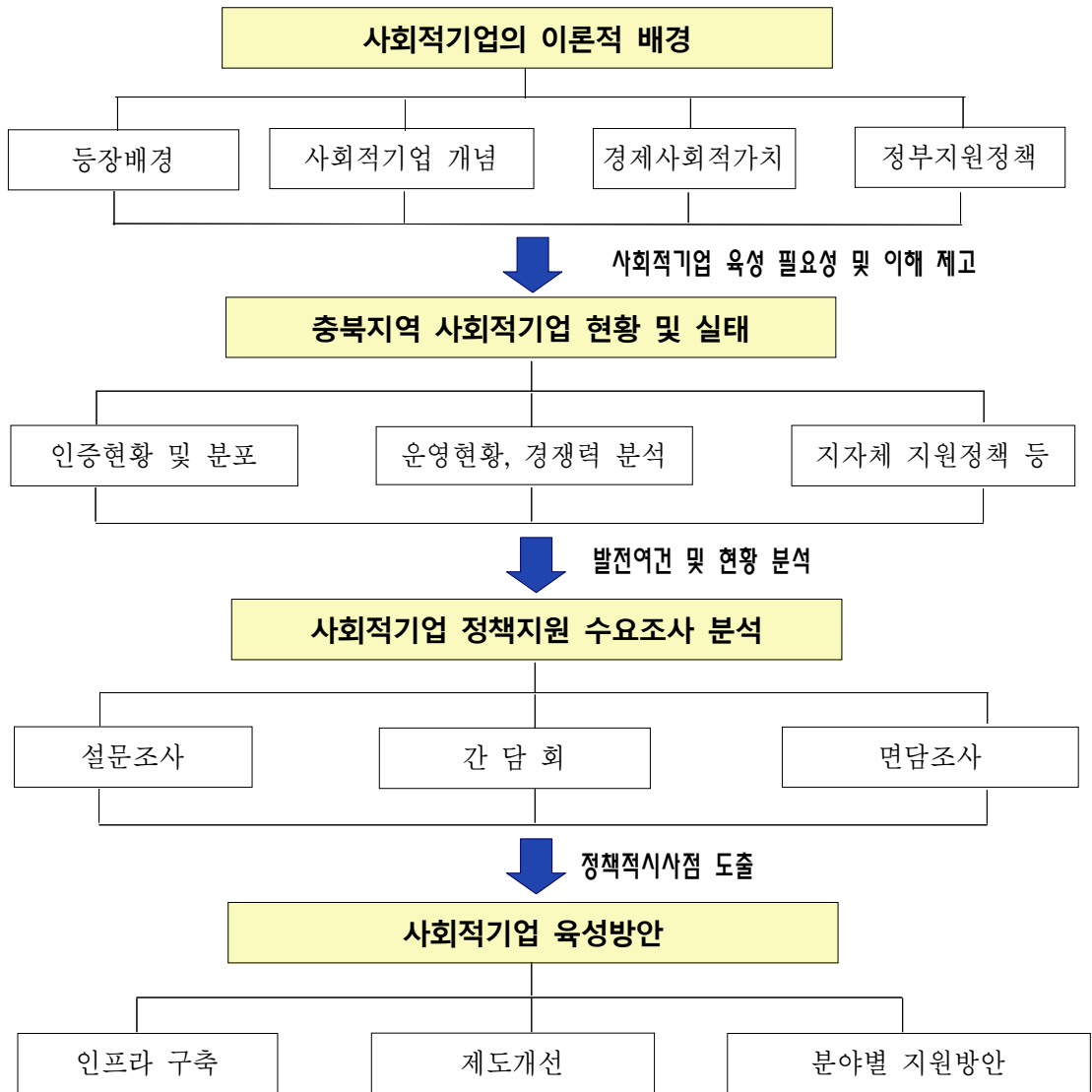
둘째, 충북지역 사회적 기업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전국과 충북지역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 및 지역적 분포에 대한 현황 정리와 함께 충북지역 인증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 업종, 유급근로자 수, 연혁, 출자현황, 지자체 및 지역기업과의 연계 등 일반현황을 제시한다. 또한 지자체 및 지역 고용센터의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의 제도적 기반 및 주요 지원정책 현황에 대해서도 분석하며, 지역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창출, 경영 효율성, 경쟁력 수준 등에 대한 실태 분석을 수행한다. 현황 및 실태분석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지역고용센터의 사회적기업 자료, 관련 통계자료, 선행연구에 제시된 비교분석자료 등을 활용한다.

셋째, 충북지역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수요 분석을 수행한다. 이러한 정책지원 수요분석은 지역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기업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활용한다.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인증신청 사유 및 인증후 만족도 분석과 함께 사회적기업의 분야별 강약점에 대한 자가평가 사항을 분석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분석으로는 경영지원, 설비비 지원, 세제혜택, 재정지원, 우선구매, 교육 등 분야별 지원정책의 만족도 수준, 정책지원 요구 우선순위, 네트워크 구축, 신규지원 수요 등의 사항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타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분석내용으로는 사회적기업 전환예정 여부, 준비기간, 전환유형, 전환에 따른 장애요소, 사회적기업 전환시 필요한 정책지원 수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수행된 현황분석 및 정책수요분석을 토대로 충북지역 사회적기업 육성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와의 자문회의 및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충북지역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효율적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기업의 정책지원 수요를 반영한 제도적 개선방안, 거버넌스 구축 등 기타 실효성 있는

분야별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그림 1〉 연구수행체계



제 II 장 이론적 배경

1. 사회적기업의 등장 배경
2. 사회적기업의 의의
3. 선진국의 사회적기업 정책
4.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제 II 장 이론적 배경

1. 사회적기업의 등장 배경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형태로써, 이윤을 추구하는 전통적 기업과 사회서비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 목적을 동시에 지닌 제3의 경제주체이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이라는 개념은 유럽을 중심으로 1970년대에 처음 등장하여 발전되어 왔으며, 1990년 이후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 실패 또는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라 야기되는 사회적 갈등, 즉 기존의 복지 및 사회제도가 해결하지 못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속에서 발전하기 시작하여 그 영역을 점차 확대하여 왔다.

구체적으로는 1991년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법 381호'에 근거한 '사회적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s)'의 발전을 전기로 이후 법률에 근거한 보다 다양한 사회적기업들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¹⁾

사회적기업은 고용구조의 변화와 인구학적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 증가 및 사회서비스 수요 확대에 따른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사회와 정부의 노력을 토대로 성장하여 왔다. 이러한 발전적 노력들은 유럽을 중심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복지모델로는 사회적위험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상황적 인식하에서 복지혼합(welfare mix)과 노동통합(work inregration)이라는 정책구상으로 수렴되었다. 사회의 복지수요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부문의 기능적 동등체로 시장과 시민사회를 인정한다는 복지혼합의 전체 속에서 다양한 복지다원주의가 추진되었으며, 노동시장에서는 고용 취약자들에 대한

1) 이탈리아의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2005)', 벨기에의 '사회적목적회사(social finality enterprise, 1995)', 영국의 '지역사회이익회사(communitiy interest company, 2005)', 핀란드의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2004)', 프랑스의 '공익협동조합(collective interest cooperative society, 2001)', 폴란드의 '사회적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 2006)', 스페인의 '사회적창안협동조합(social initiative cooperative, 1999)' 등이 있다.

적응력 향상을 위한 노동통합이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와 같은 복지혼합과 노동통합에 기초한 사회적기업은 정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가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로 등장하게 되었다. (장원봉, 2006)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도 유럽의 경우와 유사한 상황이 함께 하고 있다. 정부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논의를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 나타난 경제성장 둔화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민간부문의 고용창출 능력의 저하, 고령화 및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동시에 고용도 창출하고자 하는 주요한 정책의 일환으로 유럽의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적기업의 개념이 소개되었으며, 초기 단계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이나 자활사업의 정책방향 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이후 2000년대 들어 사회적일자리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논의는 그 범위를 점차 확장하여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의 정책적 목적과 연계되어 발전하였다. 즉, 향후 증가하게 될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일자리 및 사회적기업의 육성이 필요하고 이들 사회적일자리 및 사회적 기업은 지역단위에서 해당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여 제공하는 구조로서, 지역사회내에서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후 사회적일자리 및 사회적기업의 육성은 노동정책의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었으며, 2003년을 기점으로 사회적일자리 사업이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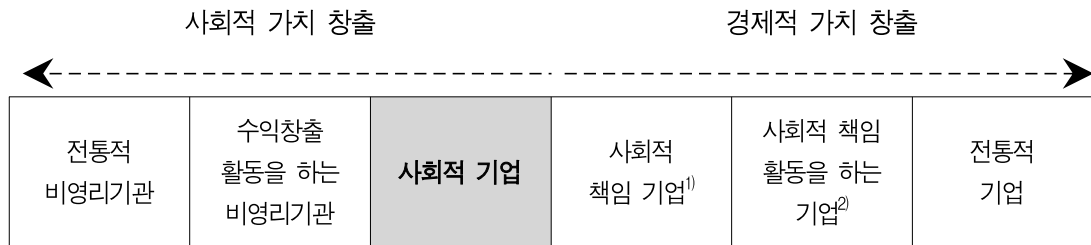
과거 고용노동부에서 추진되었던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하여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그러한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였다.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신규 고용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지원이 이루어 졌으나 정부의 재정지원이 단절되는 경우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 지적에 대해 정부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법적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2005년 3월 고용노동부, 관계부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일자리 T/F팀’을 구성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제정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2007년 1월 사회적기업의 육성법을, 동년 6월과 7월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 운영, 재정지원 및 경영혁신 등 사회적기업의 지속성을 담보하여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2. 사회적기업의 의의

1)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성격

사회적기업은 ‘공익을 위한 민간기업(OECD, 1990:10)’, ‘영리목적의 사회사업(Dees and Anderson 2003)’,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기업(Wallace 1999)’ 등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상거래를 통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는 독립된 조직을 의미한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이라는 단어와 ‘기업’이라는 단어의 합성어로서, 유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활동 수행 조직(기업의 특성)임과 동시에 규범적 측면에서 공익적 성격이 강하고 집단의 연대성이 중시되는(사회적 특성) 기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과는 차별화되어 공익추구와 이윤의 제한적 분배라는 새로운 특성을 가진 기업이라는 것이다.



자료 : 정선희(2004)에서 재인용

주1) 이윤의 상당부분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고, 미션에도 사회적 사명이 포함되어 있는 기업

주2)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만, 이를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기업.

〈그림 2〉 사회적기업의 성격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충족이라는 사회적기업의 특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사회적기업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Defourny(2001)는 그 기준을 경제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안하고 있다.

우선 경제적 차원에서의 사회적기업은 첫째, 지속적으로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활동을 하여야 하며, 둘째, 높은 수준의 자율성(정부나 사기업의 직접적 지배를 받지 않음)을 가지고 있으며, 셋째,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위험(부실경영에 대한 퇴출 위험)을 감수하고 활동을 수행하고, 넷째, 일정수준 이상의 유급노동자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기업’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법적형태로서의 기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 경영활동이라는 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조직의 형태는 협동조합, 상호부조조직, 자발적 결사체, 민간 영리기업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사회적 차원에서의 사회적기업의 판단기준으로는 첫째, 지역사회 혹은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봉사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둘째,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형성되며, 셋째, 의사결정권이 자본소유권에 기반을 두지 않고, 넷째, 사회적기업의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며, 다섯째, 이윤배분은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다섯 가지 기준을 제안하고 있다.

〈표 1〉 사회적기업의 기준(EMES)

경제적 기준	사회적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 · 높은 수준의 자율성 · 상당수준의 경제적 위험도 · 최소한의 유급 직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이익 추구 목표 명시 · 시민 주도형 · 자본소유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의사결정 (1인 1투표권) · 참여적 특성 · 이익분배의 제한

자료 :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2008.11)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법적 요건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유럽 리서치 네트워크(EMES)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사회적기업의 성격과 특성을 가장 잘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서는 사회적기업의 개념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참고]

사회적기업의 개념

○ 사회적기업이란 ①**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②**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

※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위와 같은 실질적 요건 외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요구

①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익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있을 것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 경영진 또는 주주의 독단적·일방적 의사결정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

- 수익 또는 이윤 발생시 사회적 목적 실현에 재투자할 것

※ 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해야 함

②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

- 조직형태는 비영리법인·단체, 조합, 상법상 회사 등 다양하게 인정

※ 다만, 독립된 조직으로서 정관규약 등을 구비해야 함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영업활동으로 얻은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30% 이상일 것

※ 매출액 비중은 사회적기업 인증시의 영업활동 수행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인 증후 다양한 육성시책을 통해 매출액 비중의 증가 추진

자료 :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2008.11)

2) 사회적기업의 역할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기대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의 경제·사회적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사회적기업은 이윤 창출과 공공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익창출을 통해 보다 많은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을 일반 노동시장에 통합함으로써 정부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한시적 일자리가 아닌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는 여성, 고령자 등의 취약계층에 친화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 고용 취약계층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청년, 여성, 은퇴 고령인력 등에게 창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기업은 지역단위를 기반으로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영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한 신규 서비스 수요 발굴과 지역사회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운영 및 고용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서비스 욕구를 보다 잘 파악할 수 있고 국가 등 공공부문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 수요를 발굴하여 지역상황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시민단체, 지역기업, 자원봉사단체 등의 사회적 자원을 결합하여 적절한 가격에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공서비스 시장에서의 적절한 경쟁구도는 소비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며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재정지출을 줄이는 효과도 가져 올 수 있다.

셋째, 사회적기업은 해당 지역 주민과 취약계층을 근로자로 고용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고용창출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사회적경제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자본 개발, 이윤의 지역사회 재투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은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경제수준 및 복지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자원봉사자 및 지역사회 각 경제주체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연대성 강화를 통한 사회통합적 기반 확대와 사회적 자본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넷째, 사회적기업은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민간기업의 사회적기업 연계 참여 확대를 통해 민간기업들의 윤리경영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실례로 교보생명, SK, 포스코 등의 대기업이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거나 연계참여하는 사례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의 통합적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구매 등 착한소비 문화의 확산을 유도할 수 있다.



자료 :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2008.11)

〈그림 3〉 사회적기업의 역할(가치)

3. 선진국의 사회적기업 정책

1) 선진국의 사회적기업 모델 유형

사회적기업의 출현 배경은 국가와 사회문화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바, 유사한 정치적 시스템을 가진 국가들간에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인식에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제적인 비교 자료는 체계적으로 연구되지는 못 하였지만 선행연구²⁾에서는 주로 미국과 유럽의 사회적기업이 비교되어 왔다.

2) Kerlin, J. A., "Social Enterprise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 Understanding and Learning from the Differences", 2006.

사회적기업의 태동은 유럽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지만 미국의 모델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발전적 성장을 가속화 해 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의 발전모델은 유럽형과 미국형 모델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를 한국형 사회적기업 모델과 함께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 유럽형과 미국형 사회적기업의 비교

구 분	유럽형	미국형	한국형
제도적 환경	사회적 경제	시장 경제	정부주도형 시장 경제
강조점	사회적 기여	수익 창출	일자리 창출
조직형태	협동조합과 협회 중심	재단 등 비영리기관 중심	회사와 비영리기관 중심
활동의 초점	對人(Human) 서비스	수익창출 + 비영리활동	비영리활동 + 수익창출
정부 지원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 감면	자선단체/비영리기관에 조세 감면, 보조금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인건비 지원
의사결정에의 이해관계자 참여	일반적 허용	제한적 인정	법적 허용
육성 주도	정부, EU, 민간기업	민간재단	정부
법적 프레임워크	미약, 개선中	취약, 부족	잘 준비됨
이윤분배	제한적 인정	원칙적 배제	제한적 인정 (1/3 이하)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2010.4) pp. 4 인용

미국형의 경우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기업경영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반면, 유럽형 모델의 경우 사회적 경제를 기반으로 정부와 EU가 전략적으로 육성을 주도하는 접근 방법을 취하였다. 이태리(1991년), 프랑스(2002년), 핀란드(2003년), 영국(2004년), 벨기에(2005년), 폴란드(2006년) 등은 사회적기업 조세 및 사회보험료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원 법률을 마련한 반면, 미국 등 기타 국가들은 정책적 지원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을 정의함에 있어서는 미국이 유럽보다 그 범위를 좁게 한정하고 있다. 한국형 사회적기업의 경우 미국형 시장경제 형태의 모델을 채용하면서도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형태가 가미된 수정된 시장경제모형을 도입하고 있다.

조직형태의 경우 유럽은 협동조합, 협회, 재단 등 전통적인 조직형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상업적 모델을 채용하고 있는 재단 등의 비영리조직 형태가 중심이 되어 왔다. 한국형 모델의 경우 시장경제형태의 모델을 도입하고 있어 주요 조직형태에는 상법상 회사와 비영리기관을 포괄하고 있다.

정부지원에 있어서는 미국형 모델과 유럽형 모델이 지원수단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조세감면, 보조금 지원, 사회보험지원 등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 등의 직접지원과 경영지원 등의 간접지원 등의 복합된 수단으로 정부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와 관련하여 유럽형 모델에서는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미국형 모델에서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규정에 따라 법적으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이윤분배의 관점에서는 유럽형의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미국형 모델의 경우에는 이윤분배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윤분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2) 주요 선진국의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

다음은 주요 선진국의 사회적기업에 지원 정책에 대한 내용³⁾이다.

영국의 경우 통상산업부 중소기업국 산하 사회적기업청을 설립하여 사회적기업 육성 전략에 따른 체계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1997년 복지제도 민영화 실시 이후 정부서비스의 민간 이양과 지역공동체이익회사(CIC)법을 제정을 통해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농촌지역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구매, 공동마케팅과 종업원지주제도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지원금은 기타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나 자선 기부금 및 자체 수익금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선기부금 확대, 공공 자선단체 지원을 위해 각종 세제혜택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3) 자세한 내용은 [부표 1] 참조

이탈리아의 경우 1991년 사회적 협동조합 법령을 통해 유럽 최초로 사회적기업 설립 기반을 법제화 하였으며, 세제혜택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기타 사회적기업 조직 유연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 협동조합 연구기관을 통한 교육훈련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제3섹터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이 발전된 폴란드는 법률적 기반으로서 2003년에는 공익활동과 자원봉사 활동법, 사회적 고용법 등을 제정하였으며, 2006년 사회적협동조합법을 제정하고 있다. 기타 협회, 재단 등에 대한 법적지위 인정, 세금감면, 보조금 지원 등의 지원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사회적기업 부문내 조직간 통합을 장려하고 있으며, 다양한 조직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용이하도록 법적 구조를 간소화하였다. 기타 “서비스바우처” 등의 경제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독일은 기업적 접근보다는 복지기관적 접근이 우세한 지역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제도로 인해 성장에 한계를 체감하고 있다.

벨기에는 프랑스와 유사하게 서비스바우처 등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경제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재정적 혜택의 폭과 취약계층 고용률을 연동하여 노동통합기업을 지원하고 있다.⁴⁾

3) 선진국의 사회적기업 특성 및 분야별 사례

선진 주요 국가별 사회적기업 특성을 비교한 내용은 <표 3>과 같다.

출범배경 및 시기와 관련하여 유럽은 1970년대 이태리를 중심으로 하여 신규 복지수요 대처 및 복지 민영화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1996년 복지 민영화 대책을 통해 출범하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서민 일자리창출의 관점에서 2003년 사회적기업의 태생이 시작되었다.

4) 관련 사회적기업은 급여세를 단계적으로 면제받거나,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야 함

〈표 3〉 주요 국가별 사회적기업 특성 비교

구분	미국	영국	이태리	스웨덴	한국
출범배경 (시기)	복지 민영화 ('96년)	복지 민영화 ('97년)	신규 복지수요 ('70년대~)	복지 효율화 ('90년대)	일자리 창출 ('03년~)
자원조달처 (거래유형)	시장 (판매)	시장 (판매)	사회 (기부/봉사)	정부 (업무 이양)	정부 (지원/보조금)
핵심기업 (조직형태)	기존 비영리기관 (재단)	신설 법인 (회사)	신설법인 (협동조합)	신설 법인 (NGO)	기존 비영리기관 (회사,법인)
니치마켓 (사업분야)	신규 서비스 (사회적 책임/ 윤리적 소비) (Bottom-up)	신규 서비스 (복지서비스 민영화/지방화) (Bottom-up)	기존서비스 (홈케어/재가복지/공공조달)	신규 서비스 (정부서비스 민간 이양) (Top-Down)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Top-Down)
규모/ 범위	상당한 규모 / 다양한 서비스	상당한 규모/ 도시재생,사회 통합, 공공 서비스 전달	상당한 규모/ 분명한 지위, 제한적 서비스	소규모 /제한적 서비스 (정부중심)	소규모/제한적 서비스 (정부주도)

자료 : Stephen W.K Chiu(Three World of Social Enterprise, 2006)를 토대로 작성

사회적기업의 자원 조달방법과 관련하여 미국, 영국 등은 주로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활동의 수익금을 통해 필요자원을 조달하고 있으며, 이태리와 스웨덴은 정부의 업무 이양이나 사회서비스의 형태를 통해 자원을 조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정부의 지원 및 보조금에 의존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기업 조직형태의 경우 미국은 기존 비영리기관(재단)을 중심으로 설립된 반면, 영국 등 유럽지역은 회사, 협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설립주체들에 의해 사회적기업이 설립되고 있다. 한국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상법상 회사나 비영리기관 등의 조직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전략적으로 중점을 두는 사업분야로 미국, 영국,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는 신규 복지수요나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관련된 신규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시장접근 전략을 취하고 있는 반면, 이태리의 경우에는 재가복지, 공공조달 등의 기존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장 접근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한 시장 참여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기업의 규모 및 범위적 측면에서는 미국, 영국, 이태리 등의 국가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반면, 스웨덴과 한국 등의 국가에서는 소규모이면서 제한적인 사업규모와 범위를 형성하고 있다.

다음은 휴먼서비스, 노동을 통한 훈련과의 통합, 지역개발 등의 분야별 사회적기업 사례를 제시⁵⁾한 것이다.

대인서비스 분야에서는 주로 보육, 돌봄서비스, 불우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주거서비스, 장애아동의 훈련과 재활 등의 사회적기업이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노동을 통한 훈련과의 통합 분야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제빵훈련 및 판매를 하는 미국의 루비콘 베이커리, 개인의 노동통합 분야에서 활동하는 B타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자 또는 실업자를 위한 스페인의 노동통합기업 등이 있으며, 대부분 파일럿 프로젝트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지역개발 분야와 관련된 사회적기업의 사례로는 농촌과 도시의 소규모 슈퍼마켓을 인수하여 식료품을 주로 취급하는 전국 브랜드형 사회적기업인 독일의 CAP-Market, 핀란드의 지역별 협동조합 개발 에이전시인 CDA, 네덜란드의 지역관리기업 NME, 그리스의 농장관광협동조합, 아일랜드의 지역공동체 개발기업 등이 있다.

4.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1) 제도적 기반

(1) 법령 제정

정부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법령을 제정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사회적기업 정의, 육성위원회 설치,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기업 인증, 경영지원, 우선구매, 조세감면, 인증 취소 등 2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은 1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취약계층의 기준, 사회서비스 종류, 육성위원회 심의사항 및 위원 구성,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타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육성위원회 위원 임기 및 회의, 인증서 발급, 재정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재정지원의 신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5) 자세한 내용은 [부표 2] 참조

〈표 4〉 사회적기업 육성 관계 법령

법 제정	제정일자	주요 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07. 1. 3	사회적기업의 정의(제2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제4조), 사회적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제5조), 사회적기업의 인증(제7조), 경영지원 등(제10조), 시설비 등의 지원(제11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12조),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제13조), 연계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16조), 인증의 취소(제18조)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07. 6. 29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제2조), 사회서비스의 종류(제3조), 육성위원회의 심의사항(제4조), 육성위원회의 위원 구성(제5조),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제8조)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07. 7. 18	위원의 임기(제2조), 육성위원회의 회의(제4조), 인증서의 발급(제10조), 재정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제13조), 재정지원의 신청 등(제15조)

(2)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설치, 운영

정부에서는 사회적기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하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고용노동부 차관)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외부위원은 2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을 그 임기로 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 심의, 사회적기업 인증의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2008년 정부에서는 5개년 중기 계획으로서의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08년~2012년)을 수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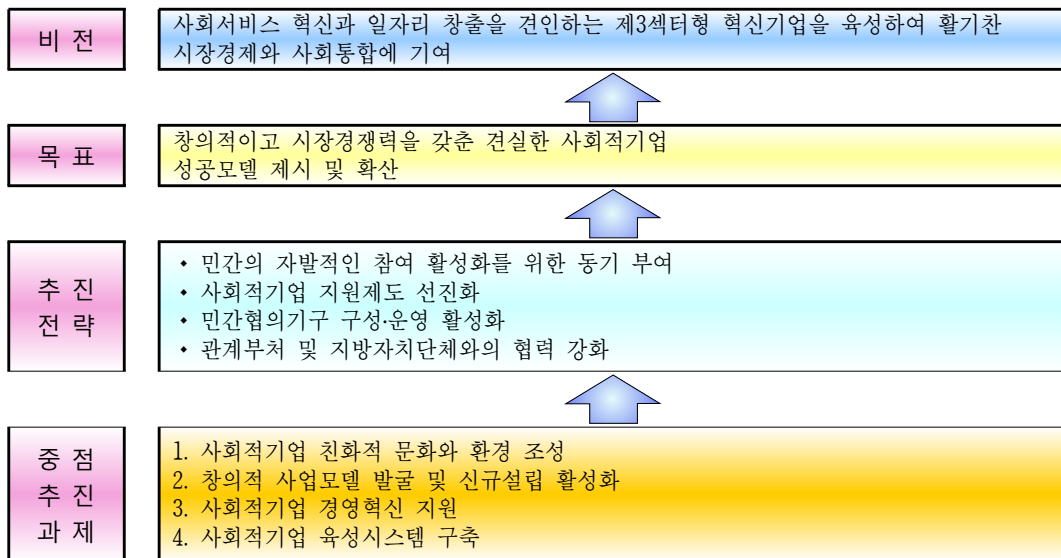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체계는 〈그림 4〉와 같다.

기본계획은 사회서비스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제3섹터형 혁신기업을 육성하여 활기찬 시장경제와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창의적이

고 시장경쟁력을 갖춘 견실한 사회적기업 성공모델 제시 및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의 자발적 참여 활성화를 위한 동기 부여,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선진화, 민간협업기구 구성·운영 활성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 등 4개의 추진전략과 4대 중점과제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 중점과제는 사회적기업 친화적 문화와 환경 조성으로서 사회적기업 가치 정립 및 전파, 민간기업과의 협력모델 확산, 공공서비스 혁신과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사회적기업 자본시장 육성기반 조성 등의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 중점과제는 창의적 사업모델 발굴 및 신규 설립 활성화로써 사회적기업가 육성, 분야별 육성 전략 마련, 재정지원사업의 사회적기업 단계적 전환육성,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시스템 구축,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등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중점과제인 사회적기업 경영혁신 지원에서는 맞춤형 경영 컨설팅 지원 강화, 내부 경영투명성 제고, 사회적기업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의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네 번째 중점과제인 사회적기업 육성시스템 구축은 성장단계별 정부지원 원칙과 철학 정립, 사회적기업 지원 제도간 연계시스템 구축, 자율과 분권에 기초한 육성·관리 시스템 마련 등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비전체계

3)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고용노동부에서는 2007년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신뢰 확보,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세제·경영지원 등의 집중 지원 및 단기간 육성, 부적절한 사회적기업의 출연방지 등의 취지에서 인증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표 5〉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인증요건	세부 내용
①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단체(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생활협동조합, 비영리 민간단체 등)
② 사회적 목적 실현	일자리제공형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사회서비스 제공형 : 사회서비스 수혜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혼합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 20% 이상 + 사회서비스 수혜 취약계층 비율 20% 이상 기타형 : 위 기준으로는 판단이 곤란한 경우 (사회적목적 실현 활동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③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인증 신청 직전 6개월 동안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동일기간 총 노무비의 30% 이상
④ 유급근로자 고용	1인 이상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재화,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 수행
⑤ 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구축
⑥ 정관·규약 구비 및 기재사항 준수	사회적 기업의 목적, 사업내용,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의사결정 방식,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용자에 관한 사항, 종사자의 구성 및 임명에 관한 사항,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정관이나 규약 등을 구비
⑦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회계연도별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상법상 회사인 경우에 한함)

사회적기업으로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7가지의 인증요건을 갖추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은 〈표 5〉와 같다.

첫 번째 인증요건은 조직형태로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자는 민법상 법인이나 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단체 등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두 번째 인증요건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관한 것으로써 사회적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등 4가지의 사회적목적 유형에 해당하여야 한다.

세 번째 인증요건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로써 인증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동일기간 동안 지급한 총 노무비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 인증요건인 유급근로자 고용은 1인 이상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인증요건의 의사결정구조는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내용은 정관이나 규약에 명시되어야 한다.

여섯 번째, 규약 구비 및 기재사항 준수의 인증요건은 사회적기업의 목적, 사업내용,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의사결정 방식, 수익배분 및 재투자, 출자 및 용자, 종사자의 구성 및 임명,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정관이나 규약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곱 번째,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의 인증요건은 회계연도별로 배분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그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 요건은 상법상 회사인 조직형태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이다.

사회적목적 실현의 인증요건과 관련하여 취약계층 고용비율 또는 취약계층의 사회적서비스 수혜 비율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바, 취약계층의 기준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해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취약계층의 기준을 <표 6>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6> 취약계층의 범위

구분	취약계층 기준
일자리 제공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장기실업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자, 모자가정, 일부 경력단절여성, 일부 청년실업자, 결혼이민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자 : 의료보험가입액 등 다양한 자료로 소득 확인 - 장기실직자 : 구직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자 - 경력단절여성 :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여성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의 70% 금액 : 2,762,630원) - 청년실업자 : 고등학교 졸업이하 학력의 실업자, 대졸 6개월 경과 미취업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 청소년, 실업계를 제외한 고교 3학년 재학생 중 대학 미진학 예정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수강 중인 청년 미취업자,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참여 중이거나 사후관리 기간 중에 있는 자

사회 서비스 제공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대상으로서의 취약계층 - 기존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 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 인정
------------	---

다음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이다.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자에 대해서는 신규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 시설 및 운전자금 용자, 경영컨설팅, 세제 감면, 인재 육성, 보호된 시장 제공 등의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의 세부내용은 <표 7>에 제시하였다.

인건비 지원은 취약계층 참여자에 대해 최장 3년간 최저임금 및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기업체 경영을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는 3명 범위내에서 최장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은 2011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기타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사업개발비로 2010년 기업당 7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등을 통해 경영컨설팅, 인재육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기타 세제감면, 보호된 시장 제공 등 사회적기업의 수익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표 7>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

지원항목	지 원 내 용
신규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참여자에 대한 최저임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 (최장 3년)
전문인력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명 범위 내에서 월 150만원 한도 최장 3년 지원(자부담율 연차별 10%→30%→50% 조정)
사업개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홍보, 마케팅, 수요조사, 상품개발 등 소요비용 지원(기업당 7천만원)
시설 및 운전자금 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당 최대 2억원 (운전자금은 3천만원 한도), 1년거치 4년상환, 이자율 : 3% - 용자대행기관 : 미소금융재단, 함께일하는재단
경영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컨설팅, 동료컨설팅, 내부 경영전문가 양성, 경영혁신 컨설팅, 공동컨설팅 등 - 연간 1천만원, 3년간 총 2천만원 이내(자부담 10%, 1천만원 초과분 20%)
세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가능 (인증 후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50% 감면)
인재육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대학(원) 학점인정 교육과정 개설, 단기교육 과정 등 운영 ■ (예비)사회적기업가 장학금 지원 - 대학(원)과정 사회적기업 근무자 등록금 지원 ■ 소셜벤처대회 운영 (청년사회적기업가 양성)
보호된 시장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위탁사업, 우선구매 촉진, 국·공유지 임대 등

4)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지정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적기업 인증 컨설팅, 사회적기업 경영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을 선정하여 관련 사업을 위탁하고 있다.

지역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현황은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서울과 경기도에 각 2개 기관, 기타 광역자치단체별로는 1개의 지원기관 등 13개 기관이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표 8>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현황(2010년)

지역	지 원 내 용	비 고
서울	(재)함께일하는재단	서부, 남부, 관악
	(사)한국경영·기술컨설팅트협회	서울전체, 북부, 동부, 강남
경기·인천	(사)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수원, 평택, 인천, 부천, 안양, 안산
	(사)민생경제정책연구소	고양, 의정부, 성남
강원	동우대 산학협력단	지역 총괄
대구·경북	(사)대구사회연구소	〃
충남·대전	호서대 산학협력단	〃
충북	충북대 산학협력단	〃
경남	사회적기업정책연구센터	〃
부산·울산·제주	(사)사회적기업연구원	〃
전북	사회적기업지원전북연구센터	〃
전남	(사)전남고용포럼	〃
광주	순천대 산학협력단	〃

제 III 장 충북지역 사회적기업 현황 및 실태

1.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현황
2. 충북지역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3. 충북지역 사회적기업 육성 기반
4. 충북지역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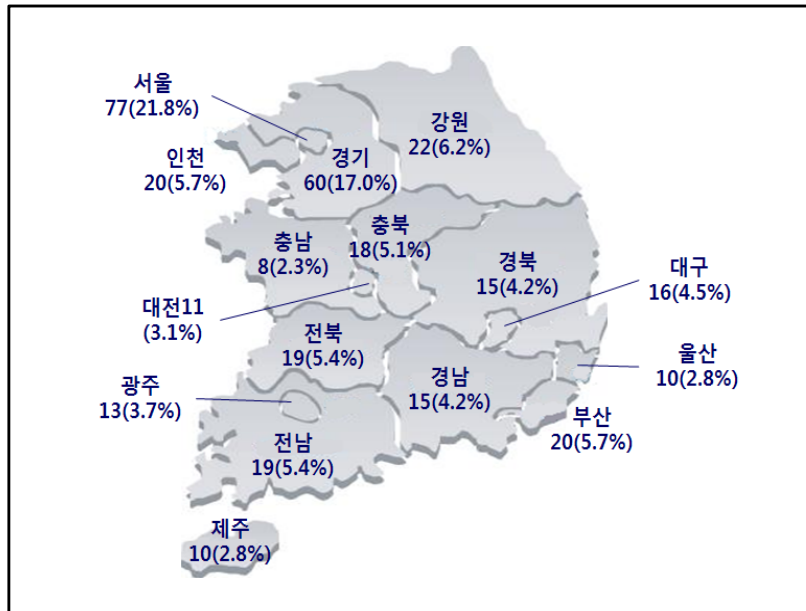
제III장 충북지역 사회적기업 현황 및 실태

1.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현황

1)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

2010년 7월 말 현재,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353개 기업으로써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사회적기업이 전국 사회적기업의 44.5%를 차지하고 있다. 충북에 소재한 사회적 기업은 18개소로 전국 대비 5%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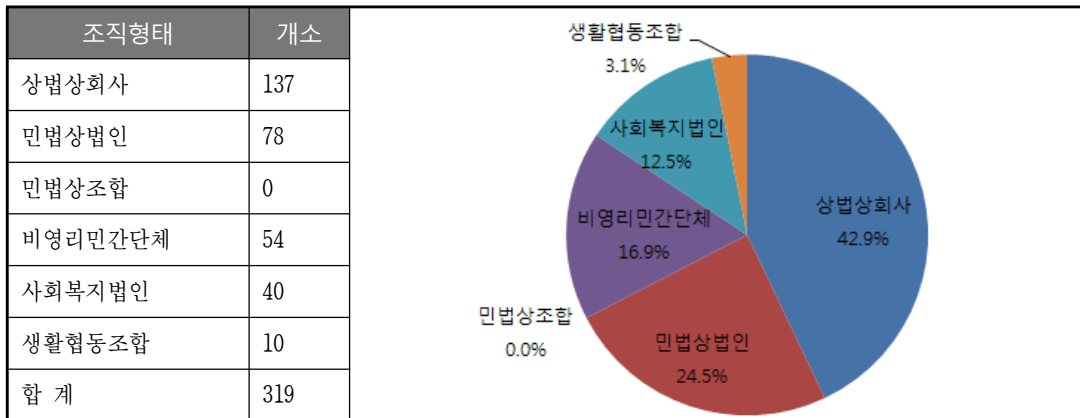
〈그림 5〉 국내 인증 사회적기업 분포

2) 조직형태별 현황

전체적으로 상법상 회사인 사회적기업이 137개소(42.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민법상 법인인 사회적기업이 78개소(24.5%), 비영리민간단체 54개소(16.9%), 사회복지법인 40개소(12.5%), 생활협동조합 10개소(3.1%)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중 민법상 조합의 조직형태는 1개소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법상 조합의 참여가 부진한 원인 분석과 함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9〉 인증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



자료 : 고용노동부 내부자료(2010. 5. 26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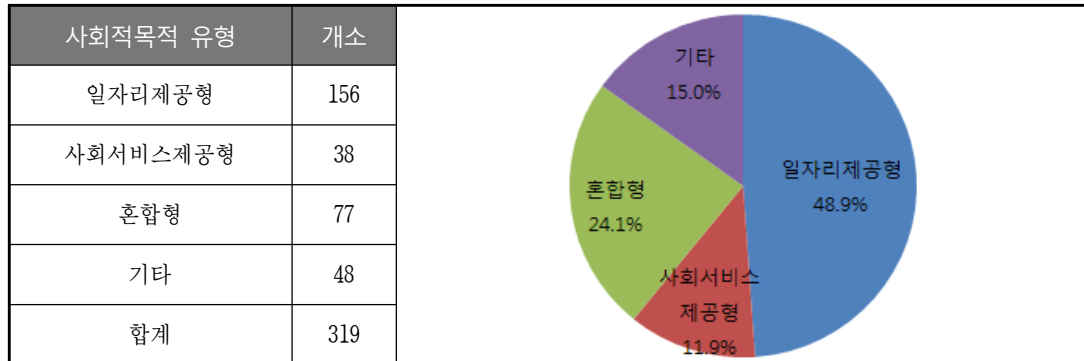
3) 사회적목적 유형별 현황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 혹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유형(일자리제공형)이 156개소(48.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혼합형 77개소(24.1%)로 나타났다.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포괄하는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이 무려 전체 사회적기업의 73%를 차지하여 11.9%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형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취

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보다는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이 대세를 이루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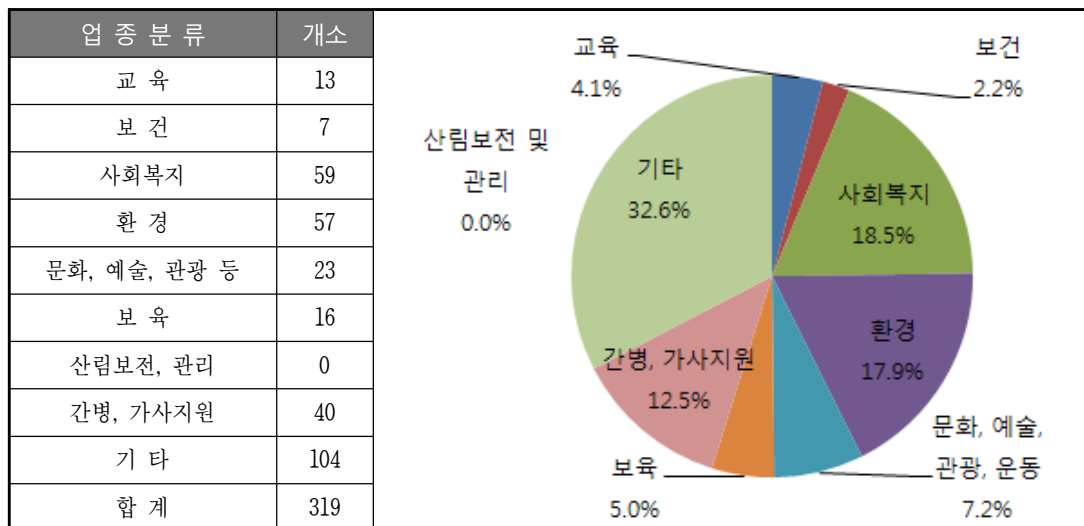
〈표 10〉 사회적목적 유형별 현황



자료 : 고용노동부 내부자료(2010. 5. 26 현재)

4) 사회적기업의 업종별 현황

〈표 11〉 인증사회적기업의 업종 유형



자료 : 고용노동부 내부자료(2010. 5. 26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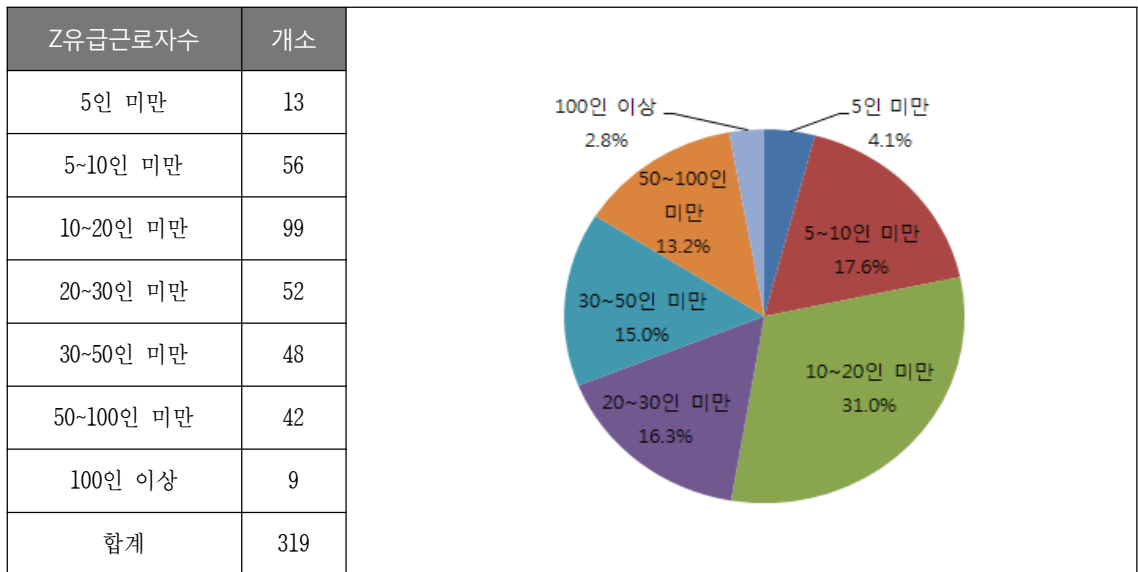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보육, 예술관광운동서비스, 산림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 지원서비스 등의 사회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다.

국내 사회적기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제시한 사회서비스 이외 기타 유형이 104개소 (3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업종별 현황은 사회복지(59개소, 18.5%), 환경(57개소, 17.9%) 간병·가사지원(40개소, 12.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5) 유급근로자 현황

인증 사회적기업의 고용규모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고용인원이 10~20인 미만인 사회적기업이 31.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0인 이상인 규모는 전체에 16%(50~100인 미만 13.2%, 100인 이상 2.8%)에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이 고용규모 면에서 일반기업체 보다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 사회적기업의 유급근로자 현황



자료 : 고용노동부 내부자료(2010. 5. 26 현재)

2. 충북지역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1) 지역별 분포 및 고용 현황

충청북도를 소재지로 하는 사회적기업은 전체 39개 업체이며, 952명이 고용되어 있다. 이 중 인증 사회적기업은 18개 업체에 575명, 예비사회적기업은 21개 사업단에 377명의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다.

〈표 13〉 충북지역 (예비)사회적기업 및 근로자 현황

(단위 : 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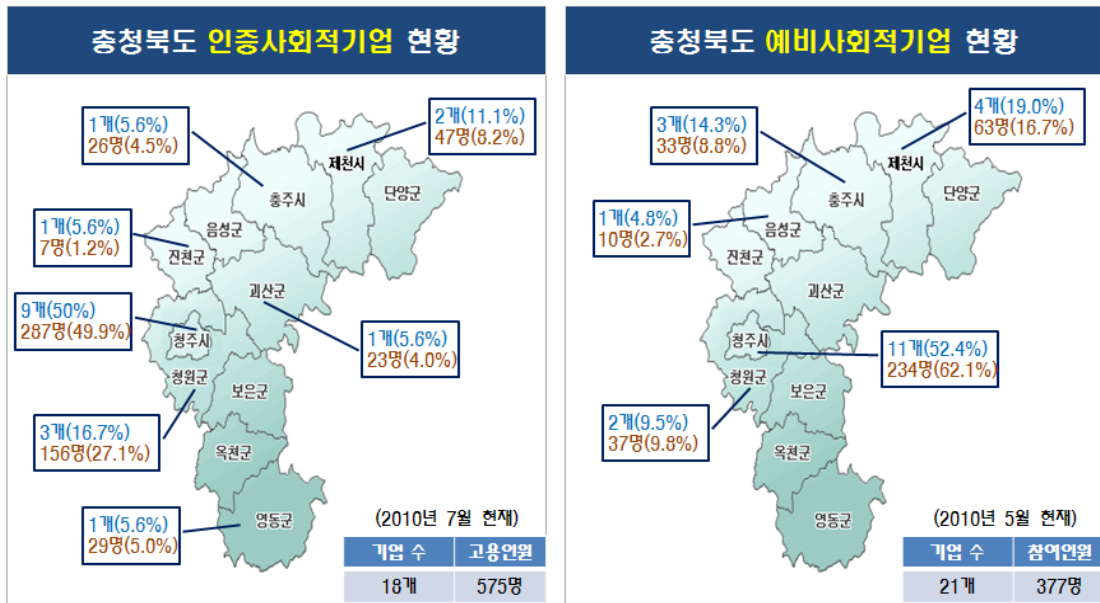
시군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합 계	
	기업 수	인 원	기업 수	인 원	기업 수	인 원
청주시	9(50.0%)	287(49.9%)	11(52.4%)	234(62.1%)	20(51.3%)	521(54.7%)
충주시	1(5.6%)	26(4.5%)	3(14.3%)	33(8.8%)	4(10.2%)	59(6.2%)
제천시	2(11.1%)	47(8.2%)	4(19.0%)	63(16.7%)	6(15.4%)	110(11.6%)
청원군	3(16.7%)	156(27.1%)	2(9.5%)	37(9.8%)	5(12.8%)	193(20.3%)
음성군	-	-	1(4.8%)	10(2.7%)	1(2.6%)	10(1.1)
진천군	1(5.6%)	7(1.2%)	-	-	1(2.6%)	7(0.7%)
괴산군	1(5.6%)	23(4.0%)	-	-	1(2.6%)	23(2.4%)
증평군	-	-	-	-	-	-
단양군	-	-	-	-	-	-
보은군	-	-	-	-	-	-
옥천군	-	-	-	-	-	-
영동군	1(5.6%)	29(5.0%)	-	-	1(2.6%)	29(3.0%)
계	18개	575명	21개	377명	39개	952명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등 3개 시지역에 소재한 사회적기업이 충북소재 사회적기업 수의 76.9%(30개), 고용인원의 72.5%(690명)를 차지하고 있어 농촌지역 보다는 도시지역에 편중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증평, 단양, 보은, 옥천 등 4개 군지역에는 인증 사회적기업은 물론 예비사회적기업도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도내 사회적기업의 64.1%, 고용인원의 75%가 청주시와 청원군에 집중되어 있어 특정지역에의 집중현상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충청북도의 군

형발전 측면에서 북부권 및 남부권 또는 군지역의 사회적기업 육성기반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보다 필요한 실정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의 바로 전 단계임을 감안할 때, 예비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지 않은 기초지자체에서의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6〉 충북지역 (예비)사회적기업 분포 및 고용 현황

2) 조직형태별 현황

사회적기업의 대표적인 법적 조직형태는 민법상 법인과 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상법상 회사 등으로 구분된다.

충북지역에서는 상법상 회사인 조직형태의 사회적기업이 전체 12개소(75%)로 조직형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타 사회복지법인 3개(16.7%), 재단법인 1개(5.6%), 사단법인 2개(11.1%)의 조직형태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어 있다.

〈표 14〉 충북 사회적기업 조직형태별 현황

(단위 :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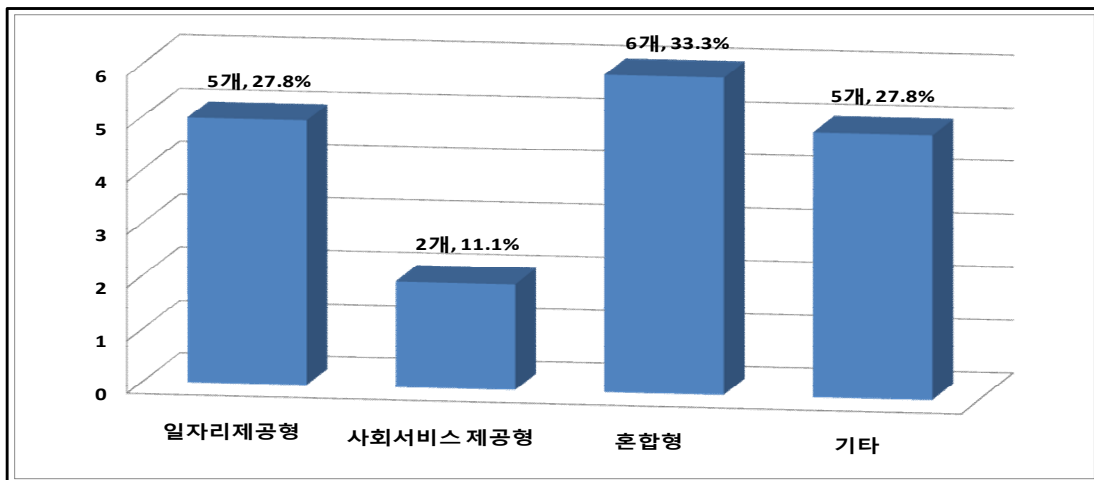
조직형태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합 계
사회복지법인	2	-	1	-	-	-	-	3(16.7%)
민법상 법인	사단법인	1	-	-	-	-	1	2(11.1%)
	재단법인	1	-	-	-	-	-	1(5.6%)
상법상회사	5	1	1	3	1	1	-	12(66.7%)
계	9	1	2	3	1	1	1	18(100%)

자료 : 고용노동부 내부자료(2010. 7. 30 현재)

주) 인증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회적기업이 없는 시군은 포함하지 않았음

3) 사회적목적 유형별 현황

사회적목적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취약계층 고용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혼합형 사회적기업이 전체 18개 사회적기업 중 6개 기업(33.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료 : 고용노동부 내부자료(2010. 7. 30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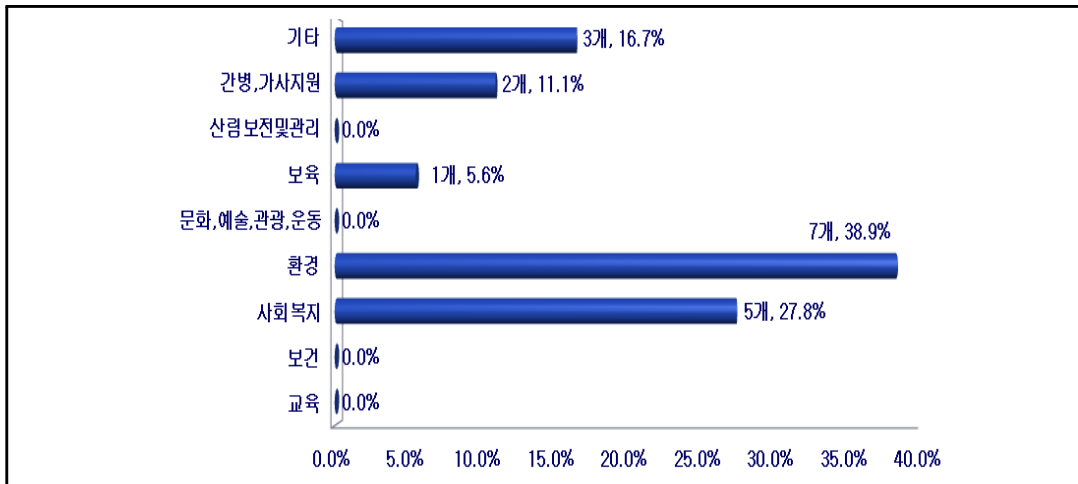
〈그림 7〉 사회적목적 유형별 현황

일자리제공형과 기타형은 각각 5개 기업(27.8%),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2개 기업(11.1%)를 차지하고 있다.

4) 사회적기업 업종별 현황

사회적기업에 따라서는 한 가지 사업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업종 분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기관의 설립목적과 사업내용을 함께 고려하여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 대분류에 따라 분류한 결과, 환경분야가 7개 소로 전체의 38.9%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많은 비중을 구성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분야 5개소(27.8%), 기타 3개소(16.7%), 간병·가사지원분야 2개소(11.1%), 보육분야 1개소(5.6%)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 : 사회적기업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go.kr)

〈그림 8〉 충북지역 사회적기업 업종별 현황

그러나 업종 분류 중 문화예술, 산림보전 및 관리, 보건, 교육 등의 업종에는 사회적기업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업종의 시민사회단체나 자활공동체가 사회적기업으

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육성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복지분야가 전체의 27.8%를 차지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이들 분야 내에도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장애인 재활교육 등 순수한 사회복지만을 수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관 본래의 설립목적보다는 사회적기업에서 수행하는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업종을 분류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15〉 예비사회적기업 업종 현황

(단위 : 개소)

업종	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음성군
사회복지	8	3	2	2	-	1
환경, 예술, 관광, 운동	3	-	1	-	2	-
보육	1	1	-	-	-	-
교육	3	2	-	1	-	-
기타	4	4	-	-	-	-
문화	2	1	-	1	-	-
계	21	11	3	4	2	1

자료 : 충청북도 내부자료

예비사회적기업의 업종분류를 살펴보면 총 6개의 분류로 나누어 볼수 있으며 이 중 사회복지 업종이 8개로 전체의 38.1%를 차지하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이 소재한 시군 중 청원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회복지 업종의 예비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고, 이러한 특정 업종에의 집중현상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다양한 업종으로의 사회적기업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5) 사회적기업 유급근로자 현황

충북지역 사회적기업의 유급근로자 고용규모는 30인 이내 규모의 기업이 전체의 66.7%를 차지하고 있으며, 21~30명 규모의 사회적기업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기타 1~10인 고용규모 4개 기업(22.2%), 11~20인 고용규모 3개기업(16.7%), 31~40인 규모와 41인 이상 규모는 각각 3개 기업(16.7%)을 차지하고 있다.

〈표 16〉 충북 사회적기업 유급근로자 현황

(단위 : 개)

근로자 규모	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1 ~ 10 (명)	4	2			1		1	
11 ~ 20 (명)	3	2		1				
21 ~ 30 (명)	5	2	1			1		1
31 ~ 40 (명)	3	1		1	1			
41 (명) 이상	3	2			1			
계	18	9	1	2	3	1	1	1

자료 : 사회적기업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go.kr)

전국 사회적기업의 유급근로자 고용현황에서는 11~20인 규모의 사회적기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 반해 충북지역 사회적기업의 유급근로자 고용규모는 21~30명 규모의 사회적기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전국평균 보다 고용규모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6) 취약계층 고용인원 현황

〈표 17〉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 현황

구 분	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사회적기업(개)	18	9	1	2	3	1	1	1
총 고용인원(명)	575	287	26	47	156	29	7	23
취약계층 고용인원(명)	306	195	16	30	39	13	6	7
취약계층 고용인원 비율(%)	53.2	67.9	61.5	63.8	25.0	44.8	85.7	30.4

자료 : 도내 사회적기업 전화 조사(2010. 7. 30 기준)

충북지역내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 비중은 53.2%로 나타났다. 지역별 취약계층 고용 비중은 진천군 소재 사회적기업이 85.7%로 나타나 기초 지자체 중 취약계층 고용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등의 지역에서 취약계층 고용비중이 60%를 상회하고 있어 충북지역 사회적기업의 전체적인 취약계층 고용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적 취지를 잘 살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충북지역 사회적기업 육성 기반

1) 자치법규 현황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자체의 조례에는 조례제정 목적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 및 조례 대상 범위 등 세부적인 사회적기업 발굴육성과 지원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조례의 대상범위로 예비사회적기업까지 폭넓게 그 범위를 포함함으로써 지역차원에서의 사회적기업 발굴과 지원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충북지역의 경우 1개 광역지자체와 2개 기초지자체 등 3개 지자체에서만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10개 시군이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로는 광역지자체인 충청북도가 2009년, 기초지자체 중 청주시와 제천시가 각각 2008년과 2010년에 조례를 제정한 것이 전부이다.

충북지역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에는 조례제정 목적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 및 지원대상 범위 등 (예비)사회적기업 발굴과 지원에 관한 세부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를 제정한 3개 지자체의 조례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2008년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한 청주시의 경우 일부 지원내용 및 홍보 등의 조항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위원수를 15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천시의 경우 7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항에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표 18〉 충북지역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현황

주요내용	충청북도	청주시	제천시
조례 제정일자	'09. 5. 8	'08. 11. 28	'10. 4. 2
목 적	○	○	○
정 의	○	○	○
사회적기업	○	○	○
예비 사회적기업	○	-	○
위원회 설치 및 구성	○(15인 이내)	○(15인이내)	○(7인 이내)
위원회 기능	○	○	○
육성계획(시책) 수립	○	○	○
발굴, 지원	○	○	○
시설지원	○	○	○
경영지원	○	-	○
재정지원	○	○	○
우선구매지원	○	○	○
민간위탁	○	-	○
민간기업 참여	○	-	○
홍 보	○	-	○
시행규칙	○	○	○

2)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구축 현황

(1) 충북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충북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위원회의 설치 규정에 따라 설치되었다.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서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과 심사, 기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

한 심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서 위원 수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10년 7월말 현재 실제 위원으로는 13명이 참여하고 있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위원장인 행정부지사, 사회적기업 관련 실국장 2명 등 공무원 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기타 도의회 의원 2명, 지방노동관서 1명, 사회적기업지원기관 1명, 일자리창출 유관기관 4명, 사회적기업 대표 2명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19〉 충북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구성 현황

구 분	충청북도	도의회	지 방 노동관서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일자리창출 유관기관	사회적기업 대 표	합계
위원수	3	2	1	1	4	2	13명

(2) 충북사회적기업협의회

지역 사회적기업의 민간협의체인 충북사회적기업협의회는 전국 최초로 협의회를 발족하였으며, 도내 인증 사회적기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충북사회적기업협의회는 사회적기업 상호간 정보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 지자체 정책 개선방안 제안, 포럼사업 등을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3)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현황

충북지역에는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사업책임자 : 최영출 교수)이 2010년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다.

충북 사회적기업지원기관은 17명의 전문인력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원사업부문, 경영지원부문, 모델발굴부문, 행정부문 등 4개 부서와 전문적인 컨설팅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지원기관은 사회적기업 현장 지원, 사회적기업 인증 지원, 사회적기업 경영자문 및 경영컨설팅 지원, 지역별 자원연계 활성화,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 성공

사례 발굴 및 홈페이지 홍보, 교육지원 서비스, 정부 재정지원사업 심사 지원 및 모니터링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4) 자활공동체 현황

2010년 3월말 현재, 충북지역에는 59개의 자활공동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527명의 수급자가 자활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표 20〉 충북지역 자활공동체 시군별 분포 현황

시 군	개수	참여자현황				
		계 (명)	수급자			그 외 참여자
			조건부 수급자	일반 수급자	자활 특례자	
총계	59	527	64	23	19	421
청주시	7	38	9	0	3	26
충주시	7	137	10	0	6	121
제천시	7	47	12	0	1	34
청원군	7	202	5	22	1	174
보은군	8	22	6	0	0	16
옥천군	4	20	3	0	0	17
영동군	3	6	3	0	0	3
증평군	1	5	3	1	1	0
진천군	5	19	3	0	5	11
괴산군	3	7	2	0	1	4
음성군	3	14	3	0	1	10
단양군	4	10	5	0	0	5

자료 : 2010년 1/4분기 자활공동체 현황, 충청북도 내부자료.

시군별 자활공동체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보은군이 8개소로 가장 많은 자활공동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증평군이 1개소로 자활공동체가 가장 적게 분포되어 있다.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청소, 재활용 분리 및 수거를 사업내용으로 하는 자활공동체가 12개소로 충북지역 자활공동체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 집수리·도배 및 장판, 간병, 폐자원 재활용 등의 업종에도 많은 자활공동체가 활동하고 있으나 음식물재활용, 세차 업종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활공동체의 참여가 미약한 분야로 나타났다.

〈표 21〉 자활공동체 업종별 현황

시군별	업체수	업종 분류										
		1	2	3	4	5	6	7	8	9	10	11
합 계	59	11	8	12	6	1	1	3	4	2	3	8
청주시	7	1		2		1			1		1	1
충주시	7	1	1	1	2				1	1		
제천시	7	1	1	1			1			1	1	1
청원군	7	1	1	1	2			1				1
보은군	8	1	1	1				1				4
옥천군	4	1	1	1					1			
영동군	3	1	1					1				
증평군	1			1								
진천군	5	1	1	1					1		1	
괴산군	3	1		1	1							
음성군	3	1		1	1							
단양군	4	1	1	1								1

주) 자활공동체 업종 분류

1. 집수리·도배 및 장판 2. 간병 3. 청소·재활용 분리 및 수거 4. 폐자원 재활용 5. 음식물 재활용 6. 세차 7. 영농 8. 식당 9. 장애통합·교육보조 10. 산모도우미·산후관리 11. 폼테리어·규방·공예·떡 제조 및 판매·식용 식물생산 및 판매·축산·침구·소매·임가공

자료 : 2010년 1/4분기 자활공동체 현황, 충청북도 내부자료.

규모별 현황에서는 참여 수급자가 5명 이하인 사업체가 전체 자활공동체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참여 수급자가 40명을 초과하는 자활공동체 사업장은 3개소로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표 22〉 자활공동체 규모별 현황

시군별	총계	수급자 참여 규모					
		5명 이하	6~10명 이하	11~20명 이하	21~30명 이하	31~40명 이하	40명 초과
합 계	59	43	7	3	1	2	3
청주시	7	4	2	1			
충주시	7	3		1	1	1	1
제천시	7	5	1	1			
청원군	7	3	1			1	2
보은군	8	7	1				
옥천군	4	3	1				
영동군	3	3					
중평군	1	1					
진천군	5	5					
괴산군	3	3					
음성군	3	2	1				
단양군	4	4					

주) 수급자 참여 규모는 조건부 수급자 + 일반수급자 + 자활특례자 의 명수를 모두 합하여 구함
 자료 : 2010년 1/4분기 자활공동체 현황, 충청북도 내부자료.

충북지역 자활공동체는 전체적으로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군단위 지역 자활공동체 대표자의 경우 고령자가 많아 신규사업의 기획 및 확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지역내 사회적기업의 예비자원으로서 자활공동체를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공감하나, 어떠한 방법으로 자활공동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4. 충북지역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분석

국내 타 지자체와 비교된 충북지역의 사회적기업 경쟁력 분석을 위해서는 전국의 모든 사회적기업의 재무자료 및 성과자료가 필요하나 실제로 자료의 입수가 곤란하여 2009년 고용노동부 용역과제 보고서인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보고서”를 기초로 관련 분석내용과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 충북지역 경쟁력 수준

사회적기업 경쟁력 수준을 자기보고식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조사한 정리자료에 따르면 충북지역 사회적기업의 전반적 경쟁력 수준은 3.83점으로써 전국 지자체 중 3위에 해당한다.

충북지역의 부문별 경쟁력 수준을 비교해 보면 재정적 기반에서의 2.5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5점 척도 중 3점 이상의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응답한 부문은 고객만족도(4.0점), 품질(3.92점), 기술수준(3.85점) 등 이었으며, 지표들 중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게 응답한 부문은 재정적기반(2.5점), 사업기초인프라(3.08점), 생산규모(3.17점)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의 자립화와 직결되는 영업활동, 유통경로 및 판로확보 등의 지표에서는 타 지자체에 비해 다소 안정적이라고 응답하였으나, 민간영역을 중심으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지역별로 본원적 활동과 지원적 활동에서 어떤 부분이 더 경쟁력이 있는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지역의 경우 고객만족도, 품질 등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반면, 재정기반, 사업기초인프라 등에서는 경쟁력에서 다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쟁력 지표를 통해 충북지역 사회적기업들은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재정지원이나 사업기초인프라 등에서 경쟁력이 낮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자립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부문에서의 영업활동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재정지원과 함께 공공부문에서의 영업활동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충북지역 사회적기업의 강약점

사회적기업이 인지하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우선순위에 따라 각각 3가지씩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된 자기평가 결과⁶⁾이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격과 품질, 인지도 측면에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자본력, 홍보 및 마케팅 능력, 경영역량 등을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6)곽선화(2009), 2008 사회적기업 성과분석(노동부) 참조

충북지역 사회적기업들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강점으로 지적한 요인은 품질(21.2%), 인지도(21.2%), 인적자원(13.6%) 등이며, 반대로 자본력(30.0%), 경영역량(16.7%), 인적자원(11.7%) 등을 약점으로 응답하였다.

여기에서, 인적자원 요소는 충북지역 사회적기업의 강점으로도 비교적 상위 순위에 매겨진 반면, 약점에서도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점에서 다소 의아한 결과로 생각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다수의 사회적기업이 비교적 인건비가 낮은 인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강점으로 작용하나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어렵고 구성원의 성취동기 및 작업의욕 등 생산성이 낮다는 것이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다만, 강점과 약점 분석내용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특정지역의 강점이나 약점이 표출되지 못하고는 있으나 우리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의 자본력 증대를 위한 사회적자본 연계 및 확충, 경영혁신을 위한 컨설팅 지원, 인적자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정책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은 명백하게 얻을 수 있는 결과로 판단된다.

제 IV 장 충북지역 사회적기업 정책수요 분석

1. 정책수요조사 개요
2. 사회적기업 정책수요 분석
3. 예비사회적기업 정책수요 분석
4. 인증 및 예비 사회적기업 정책수요 비교 분석
5. 면담조사에 따른 정책 수요

제IV장 충북지역 사회적기업 정책수요 분석

1. 정책수요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충북지역 사회적기업의 정책수요를 조사 분석하기 위하여 도내 (예비)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개요는 <표 23>과 같다.

<표 23> 정책수요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조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 7. 12 ~ 7. 20 (9일간)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33개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사회적기업 : 16개 - 예비 사회적기업 : 17개 (사회적기업과 중복되는 사회적일자리 사업단 4개 제외)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메일)을 이용한 설문지 발송 및 회수 - 전화를 통한 설문지 작성에 대한 안내 및 독려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 일반 현황 : 소재지, 창업연도, 설립자본, 근로자 현황, 연간수입, 설립모태 등 ■ 인증사유 및 만족도, 지원 수혜내용 및 만족도, 경쟁력 수준 및 강약점 ■ 사회적기업 전환 저해 요인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수요
설문지 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수율 : 69.7%(33개 중 23개 회수)

2. 사회적기업 정책수요 분석

1) 사업체 일반 현황

(1) 고용현황

설문조사에 응답한 14개 인증 사회적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의 남녀 구성비율은 남성이 31.6%, 여성이 67.4%로 여성근로자의 참여 비중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용된 근로자 중 취약계층 근로자는 55.8%를 나타내고 있어 지역내 사회적기업들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사회적기업 참여근로자 현황

참여 근로자 현황		명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구성비율	남성	108	31.6 %	31.6 %
	여성	234	68.4 %	100 %
	계	342	100 %	
취약계층 근로자수		191	55.8 %	

(2) 직전연도 경영성과

충북지역 사회적기업의 2009년 결산기준 경영성과를 살펴 본 결과 흑자인 기업이 64.3%로 적자기업 35.7%보다 높게 나타났다. 적자기업의 경우 사회적기업 지원이 종결된 이후 자립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원인분석과 함께 자립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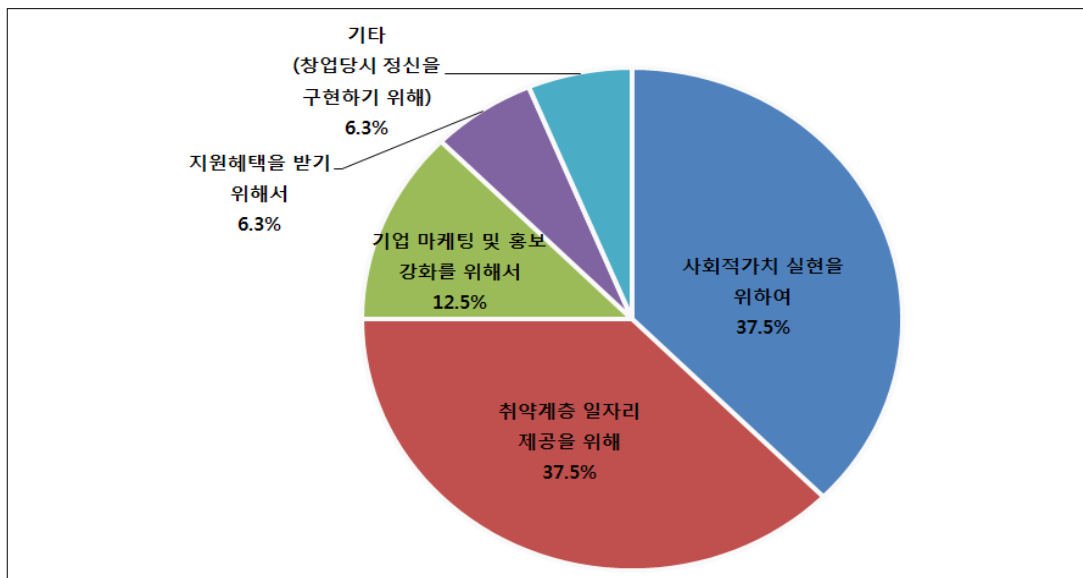
〈표 25〉 직전연도 경영성과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흑 자	9	64.3 %	64.3 %
적 자	5	35.7 %	100 %
합 계	14	100 %	

2) 사회적기업 인증 사유 및 만족도

(1) 사회적기업 전환 사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게 된 이유로는 ‘사회적가치 실현’,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의 응답이 각각 37.5%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충북지역 사회적기업들이 수익증대의 영리적 목적이 아닌 사회적가치 실현이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목적 달성을 주된 목적으로 정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결과이다.



〈그림 9〉 사회적기업 전환 사유

(2) 사회적기업 전환 후의 대내외적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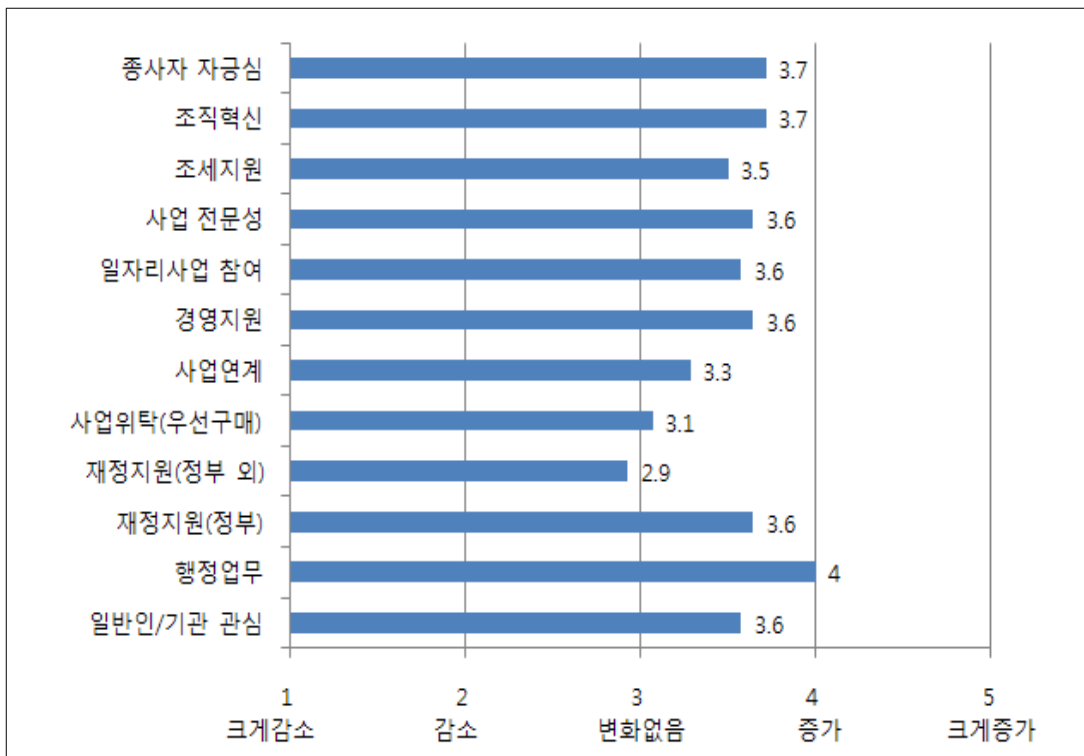
다음은 사회적기업 전환 이전과 비교하여 전환 후에 어떠한 대내외적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 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대내외적 효과의 개선정도와 관련하여 재정지원(정부외), 사업위탁(우선구매), 사업연계, 사업전문성, 조세지원 분야에서는 응답자의 50% 이상이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으

며, 특히 재정지원(정부외), 사업위탁(우선구매) 분야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행정업무 분야에서는 그 효과가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71.4%로 나타났으며, 종사자자금심 분야에서도 효과가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64.2%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들의 경우에도 재정지원이나 우선구매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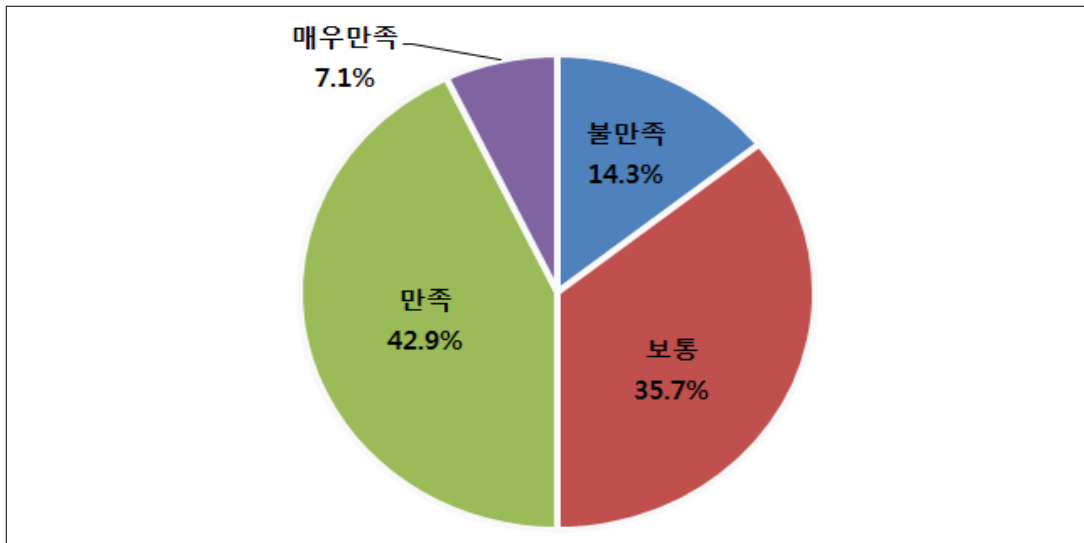
〈그림 10〉 사회적기업 전환 후의 대내외적 효과

(3) 사회적기업 인증에 따른 만족도

사회적기업 인증 후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만족’이라는 응답이 42.9%로 가장 높게 나왔으나 ‘보통’이라는 응답 35.7%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기타 ‘불만족’ 14.3%와 ‘매우만족’ 7.1%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개별 사회적기업에 따라 만족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만족 응답자들은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없다”, “제도만 있을 뿐 실제 지원되는 것은 없다” 등을 불만족 사유로 답변하였다. 반면,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회적기업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도와 책임감 증가, 우선계약 및 구매로 인한 안정적 수익원 확보, 사업영역 확대 등을 구체적인 이유로 거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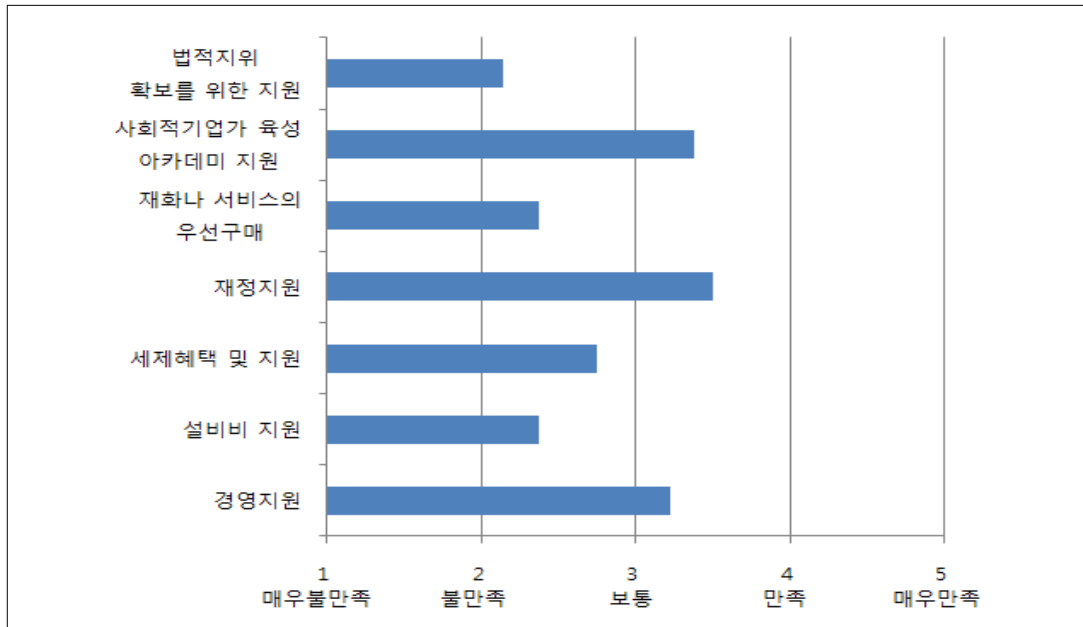
〈그림 11〉 사회적기업 인증에 따른 만족도

3) 사회적기업 지원 수혜내용 및 만족도

충북지역 사회적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인건비, 4대 보험료, 전문인력, 법인세 감면 등의 수혜를 받고 있으며, 지자체로부터는 사업개발비 지원, 희망근로 파견, 공공사업 위탁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계기업과는 협력관계가 미흡하여 구체적인 지원 및 협력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홍보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만족도의 경우 전체적인 만족도는 만족이상의 응답보다 불만족 또는 매우불만족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항목별 만족도에 있어서는 5점척도 기준 3점이상에 해당하는 보통이상의 만족수준을 나타낸 항목은 사회적기업가 육성 지원, 재정지원, 경영지원 등 3개 항목에 불과하였으며, 법적지위 확보, 재화 및 서비스 우선구매, 설비비 지원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12〉 사회적기업 지원항목별 만족도

대표적인 불만족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응답들이 제시되었다.

- 세제혜택, 우선구매, 법적지위 확보 등이 실제적 지원이 되지 못함
- 지원내용이 한시적이고 미약함
- 현실적으로 인건비 지원외에는 지원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음
- 경영컨설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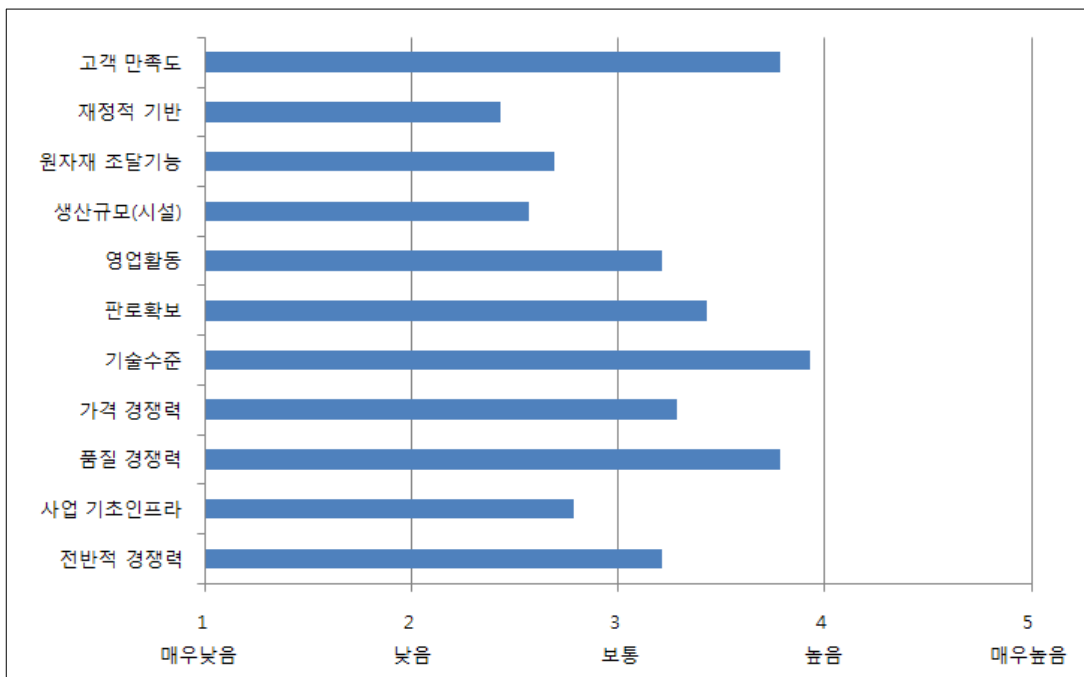
4) 경쟁력 수준 및 강약점

(1) 경쟁력 수준

충북지역 사회적기업의 자기 평가에 의한 경쟁력 수준을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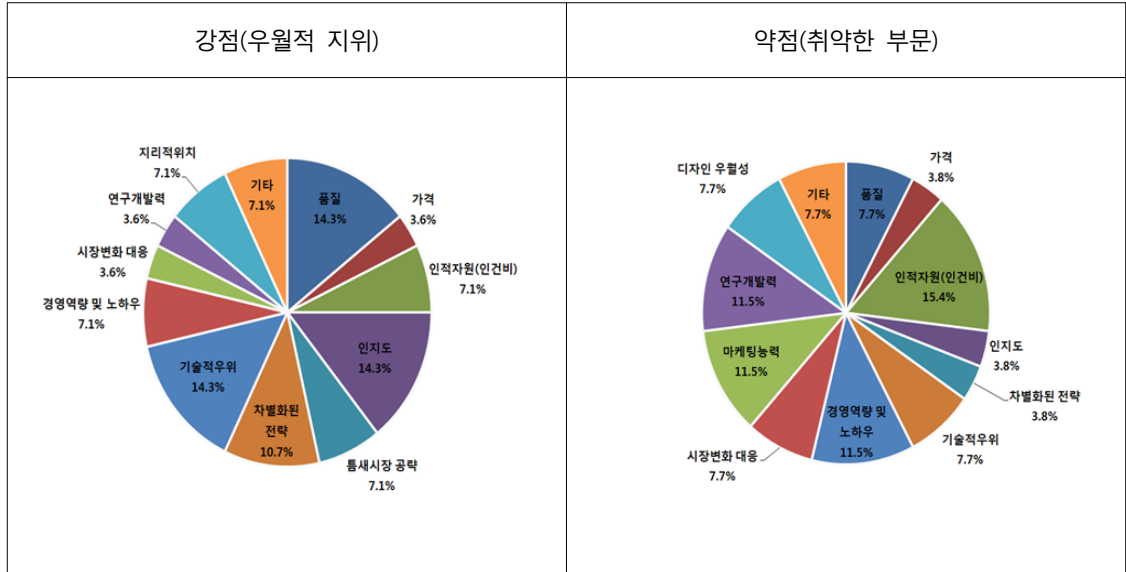
조사대상 사회적기업들이 보통 이상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부문은 고객만족도, 기술수준, 품질 경쟁력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재정적기반, 생산규모(시설), 원자재 조달기능, 사업기초인프라 등의 부문에서는 보통이하의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응답하였다.

충북지역 사회적기업들이 경쟁력이 낮다고 평가한 항목들은 대부분 자금조달과 관련된 부분으로써 인건비 지원 이외의 시설투자 등의 필요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3〉 충북지역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수준

(2) 강점과 약점



〈그림 14〉 충북지역 사회적기업의 강점과 약점

충북지역 사회적기업들이 강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분야는 품질, 인지도, 기술적 우위, 차별화된 전략 등으로 응답하였으며, 약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분야는 인적자원, 경영역량, 마케팅 및 연구개발 능력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분야와 관련하여 인적자원의 경우에는 낮은 인건비의 경우 강점으로도 작용하나, 고용 인력들의 생산성 저하에 따른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점을 약점으로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정책지원 수요

(1) 정책지원 수요분야

사회적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적 지원 수요에 대한 조사항목에서는 공공기관 사업위

탁(28.6%), 시설비지원(17.9%), 우선구매(14.3%) 등의 순서로 지원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정책지원 수요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공공기관 사업위탁, 우선구매 등 판로개척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지역 사회적기업들이 민간부문의 판로를 충분히 개척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조차도 판로개척이 쉽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타 시설비 지원의 지원수요가 높게 나타난 것은 노후시설 대체 및 신규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 할 것이다.

(2) 컨설팅 지원 수요 및 컨설팅 제공 방식

충북지역 사회적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컨설팅 지원 수요 분야는 응답자의 29.2%가 선택한 사업성 분석과 20.8%가 선택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컨설팅 지원에 있어서는 신규사업 개척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으며, 기타 마케팅/홍보, 회계/재정관리, 노무/교육훈련, 사회적자본 확보 등의 순서로 컨설팅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팅 제공방식에 있어서는 사회적기업지원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컨설팅과 홍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컨설팅 전문 민간기관으로부터의 지원방식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네트워크 수요 및 선호도

네트워킹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수요분야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필요성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0%가 선택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회적 자원동원, 공공마케팅/홍보, 판로개척, 공동구매 등을 위해 네트워킹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네트워크 구축형태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업종별 네트워크를 선호하는 응답자가 61.5%를 차지하여 지역별네트워크를 선호하는 응답자 30.8%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재 사회적기업의 업종이 보다 세분화되고 있고 실질적 정보교환 및 협력사업을 위

해서는 단지 인접한 사회적기업이 모이는 수준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발굴, 공동 마케팅, 기타 협력사업 전개가 가능한 업종별 네트워크가 보다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4) 프로보노 상시자문 요구 분야

프로보노로부터 상시자문을 받고자 하는 요구분야 조사에서는 경영전략, 마케팅 및 홍보, 기술생산품질 등의 항목이 높게 나타났다.

기타 회계·재무, 리더십, 법무/법률, IT 등의 분야에 대한 상시자문 수요도 요구분야로 응답하였다.

(5) 기타 정책적 지원 수요

앞에서 살펴 본 정책지원 수요 이외에 사회적기업들은 제도개선 등 다음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였다.

- 상법상 법인 조직형태의 사회적기업은 현재 주식회사로 분류되어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형태의 사회적기업에 대해 비영리단체에 준하는 자격을 인정해주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 지자체 위탁사업 확대
- 지원기간 연장 : 3년에서 10년으로
- 세제지원 확대 : 법인세, 부가세 등
- 지자체 소유의 유희건물 및 유희지 대여
- 연계기업의 인센티브제공 및 홍보
- 시설비 지원
- 사회적일자리 사업 연장
- 세제혜택이 폭넓게 확대되어야 함 : 후원금, 연계기업 등
- 시설인프라 지원체계 : 지자체 위탁, 사무실 임대 지원 등
-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정규직 채용시 인건비 계속 지원(부분지원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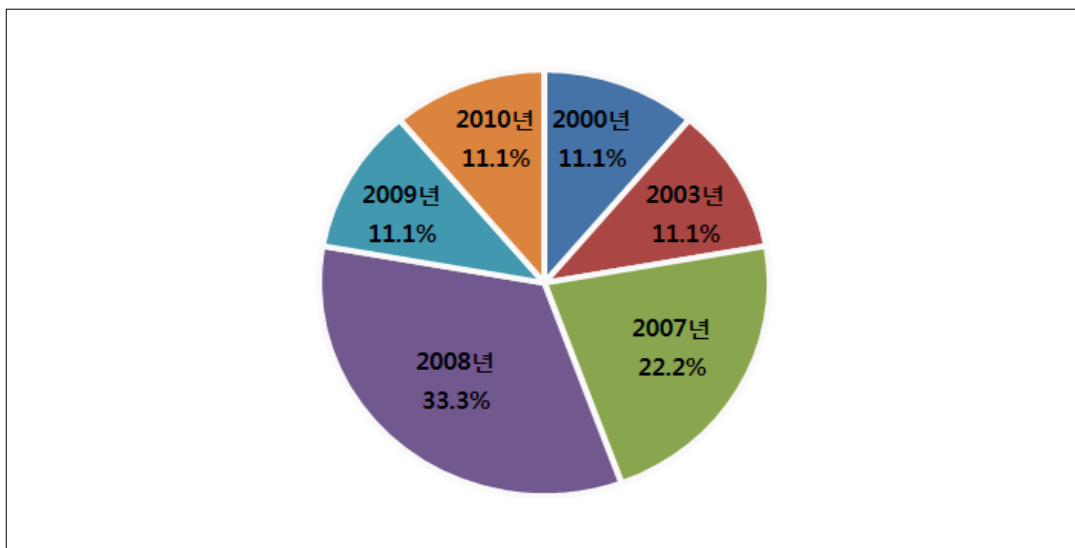
- 전국단위로 시행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지원이나 정부 부처에서 가용예산을 관련 사업에 책정할 수 있는 시책이 필요
 -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및 도교육청의 예산 배정이 12개월 단위가 아닌 9~10개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2~3개월의 수익이 거의 전무한 상태

3. 예비사회적기업 정책수요 분석

1) 사업체 일반현황

(1) 창업연도

설문조사에 응답한 9개 예비사회적기업의 창업연도를 살펴보면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2개와 3개 기업이 창업하여 2~3년 정도의 업력을 가진 예비사회적기업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9〉 예비사회적기업의 창업연도 분포

사회적기업 인증제도가 시작된 2007년과 기본계획 등 활성화 시책이 마련된 2008년에 상대적으로 많은 창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 근로자 현황

조사대상 예비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남녀 구성비율은 남성이 11.1%, 여성이 88.9%로 여성근로자의 참여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용된 근로자 중 취약계층 근로자 비중은 60%를 나타내고 있어 지역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통합을 위해 예비사회적기업들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예비사회적기업 고용 현황

구 분		인원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구성비율	남	21	11.1 %	11.1 %
	여	169	88.9 %	100 %
	계	190	100 %	
취약계층 근로자수		114	60.0 %	

(3) 직전연도 경영성과

충북지역 예비사회적기업의 2009년 결산기준 경영성과를 살펴보면 흑자인 기업이 62.5%로 적자기업 37.5%보다 높게 나타났다.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성과는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영성과와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예비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예비사회적기업 단계에서 적자기업의 원인분석과 함께 수익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4) 주요 사업내용

충북지역 예비사회적기업들은 사회적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 우리밀버거판매
- 친환경 도시락판매
- 계절제품 판매 및 식사제공
- 친환경매장 운영
- 가정방문보육서비스 & 아동토탈서비스
- 방과후 아동지도 및 교육서비스
- 영·유아용품 유·무료 대여 및 판매관리서비스
- 연극공연 예술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일회용 물티슈 생산 및 판매
- 지역 친환경 농가와의 연계를 통해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 취업 취약계층 여성들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
- 전통 장류 제조, 판매
- 반찬제조
- 도시락 제조
- 시각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지역봉사단 활성화
- 다문화체험 프로그램 및 다문화체험 부스 운영
- 다문화 공연 : 춤, 연극 등

예비사회적기업들은 보육, 교육, 친환경식품, 문화공연, 다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일반 제조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업영역을 만들어 가고 있다.

2) 정책지원 수혜 및 만족도

(1) 지원받고 있는 정책지원 내용

도내 예비사회적기업들이 현재 지원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의 경우 ‘인건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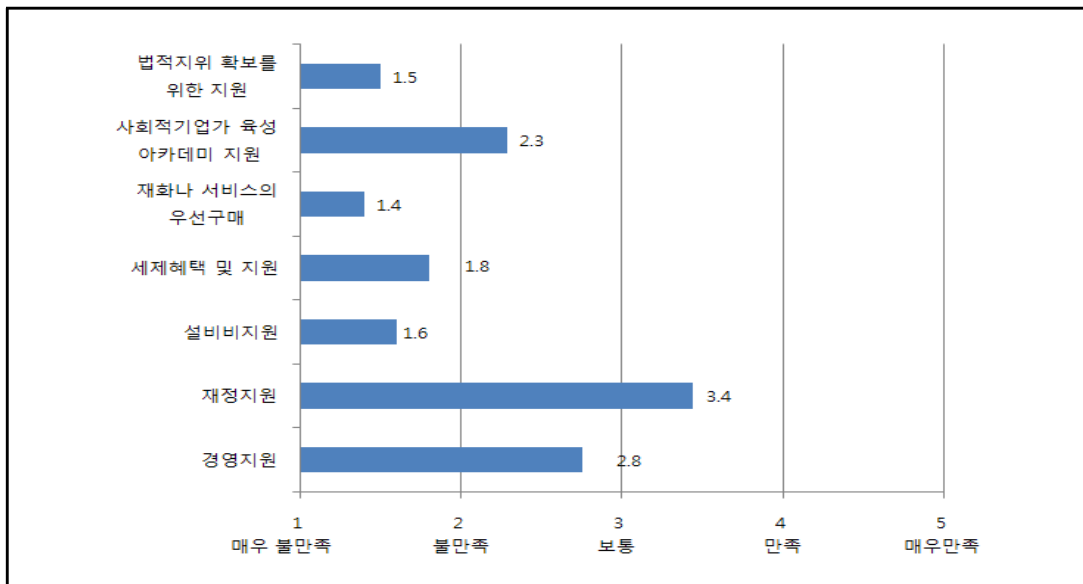
지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사업비 일부, 임대보증금, 개업 초 시설비 일부'라고 답하였다.

〈표 27〉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원받고 있는 자원

지원기관	지 원 내 용
정부(고용노동부등)	직원임금 및 4대 보험료
지방자치단체	사업비 일부, 임대보증금, 개업초 시설비 일부
일반(연계)기업	운영비 일부, 매월 일정금액의 후원금 지원, 컨설팅 지원 등
민간단체	운영비 일부지원 등

(2) 지원받고 있는 자원에 대한 만족도

도내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지원받고 있는 자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그림 20〉에 제시하였다.



〈그림 20〉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만족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자원 중 재정지원 항목만이 만족도 수준이 보통을 넘어설 뿐, 기타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가 보통이하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예비사회적기업들의 정책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법적지위 확보, 우선구매, 설비비 지원 등의 항목은 매우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자들의 불만족 사유는 다음과 같았다.

- 적은 보수로 인한 전문인력 채용 불가
- 일반영리기업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이 떨어짐
- 개발비, 홍보비 등을 기관에서 조달하기 힘든 상황임
- 세계 관련 문제로 인해 민간시장 진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
- 소요비용 지원 및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의 지원이 미흡한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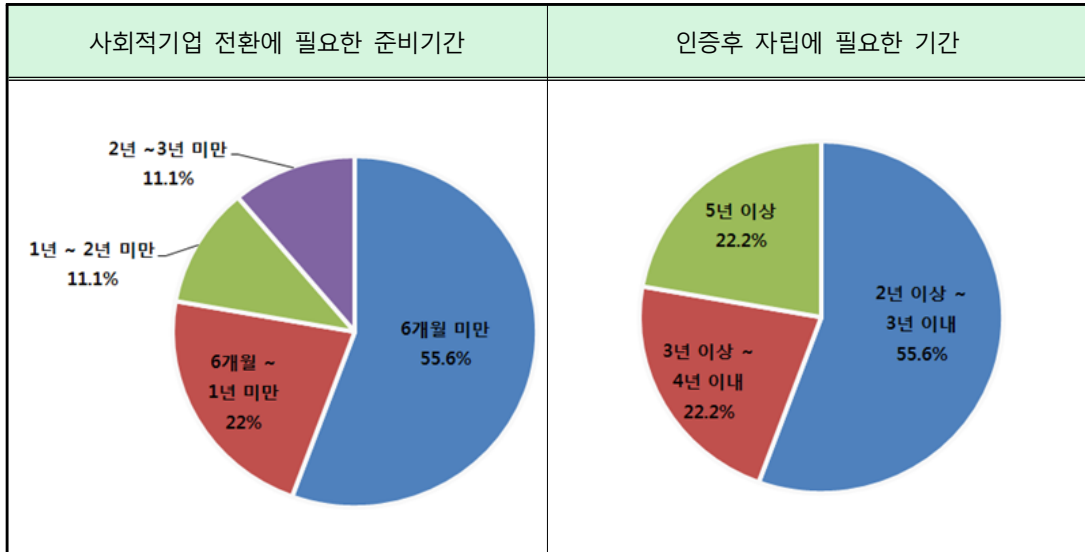
3) 사회적기업 전환 수요

(1) 사회적기업 전환계획 및 자립 필요기간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계획이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항목에 대해서는 응답기업 100%가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전환에 필요한 준비기간에 대해서는 6개월 미만이 55.6%로 가장 많았으며, 6개월~1년 미만의 응답은 22.2%로 나타났다. 기타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이 각각 11.1%로 조사되었다.

인증 후 시장에서의 자립에 필요한 기간을 묻는 항목에서는 2년 이상~3년 이내가 55.6%로 가장 많은 기업이 응답하였으며, 3년 이상~4년 이내, 5년 이상이 각각 22.2%로 나타났다.



〈그림 21〉 사회적기업 전환 계획 및 자립 필요기간

(2)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사유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유로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기간 종료’라는 응답이 44.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사업의 성공가능성 증대’ 등이 각각 22.2%로 나타났다.

〈표 28〉 사회적기업 전환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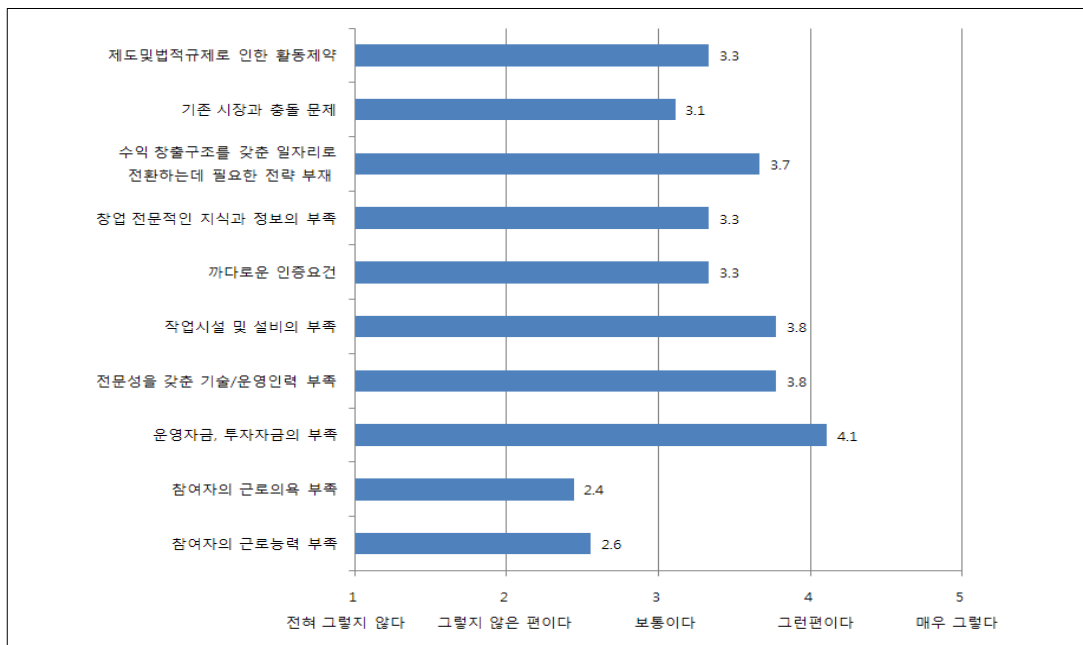
항 목	빈도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2	22.2 %	22.2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기간 종료	4	44.5 %	66.7 %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2	22.2 %	88.9 %
기 타	1	11.1 %	100 %
합 계	9	100 %	

이러한 결과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들은 자립화 기반이 취약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필

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의 응답으로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의 활동’, ‘사회적 목적과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3) 사회적기업 전환 저해요인



〈그림 22〉 사회적기업 전환 저해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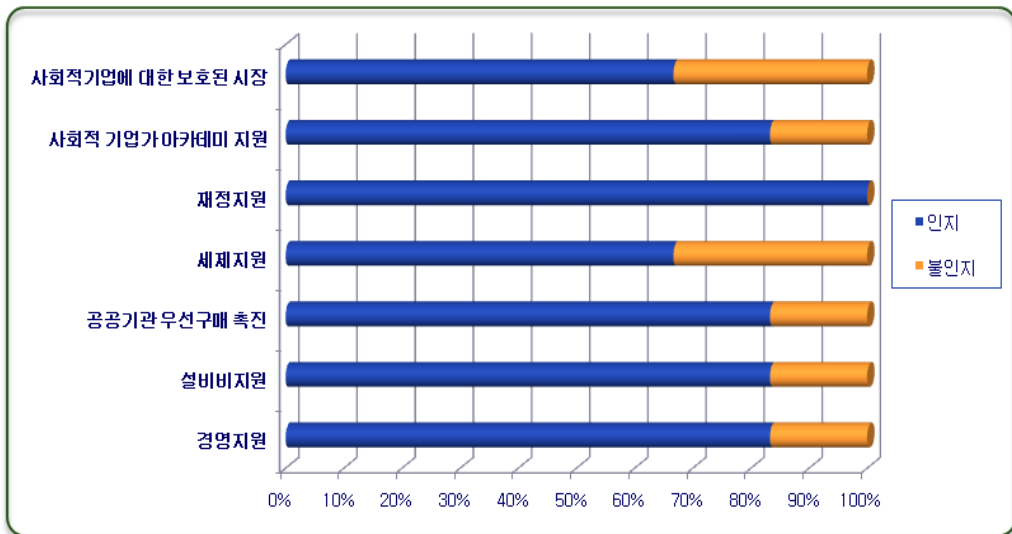
사회적기업 전환에 장애가 되는 저해요인을 묻는 질문항목에서는 ‘운영자금, 투자자금의 부족’이 1순위로 나타나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사회적기업 전환시 자금부족 등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전문성을 갖춘 기술/운영인력 부족’, ‘작업시설 및 설비의 부족’ 등의 응답이 2순위로 나타나, 시설비 지원 및 참여자에 대한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참여자의 근로의욕이나 근로능력 등 사회적기업 구성원의 일하고자 하는 의지는 큰 저해요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4) 사회적기업 전환에 따른 지원내용 인지여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시 제공되는 7가지 기본적인 지원내용에 대해서 예비사회적기업들은 평균 66.7% 이상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세제지원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호된 시장 등의 지원항목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책 홍보와 컨설팅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3〉 사회적기업 전환에 따른 지원내용 인지여부

4) 예비사회적 기업 정책지원 수요

(1) 정책지원 요구 분야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요구분야는 인건비지원(33.3%), 사업비지원(22.2%), 시설비지원(3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예비사회적기업들이 간접적인 지원보다는 재정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내용을 보다 더 필요로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 정부의 재정지원 의존도가 여전히 높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다만, 정부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되는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화는 더욱 힘들어 질 것이기에 재정지원과 함께 제도적 개선 등 간접적 지원방법을 개선하여 예비사회적기업들의 자립화 기반을 조속히 착근하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컨설팅 지원 수요 및 제공 방식

도내 예비사회적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컨설팅 지원 수요 분야는 마케팅/홍보 33.3%, 회계/재정관리 22.2%, 사회적자본 확보 및 사업성 분석 이 각각 11.1%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예비사회적기업들의 수익성 다변화를 위한 방법과 기업의 재무구조 건전성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지식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 제공방식 선호도에서는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에서의 제공방식(33.3%)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정 경영지원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보다 많은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컨설팅 전문 민간기관에의 컨설팅 지원방식도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예비사회적기업의 컨설팅 지원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지원기관을 중심으로 프로보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러한 전문지식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3) 네트워크 수요 분야 및 구축 형태 선호도

예비사회적기업들이 네트워킹을 필요로 하는 수요분야는 공동마케팅/홍보 분야의 응답이 2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시장분석/판로개척(20.8%), 전문인력 교류(12.5%), 노무/법무 공동대응(12.5%)의 분야 순으로 네트워킹을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네트워킹 구축형태 선호도 조사에서는 사회적기업 조사결과와는 다르게 지역별 네트워크 형태를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프로보노(전문지식 기부자) 지원 요구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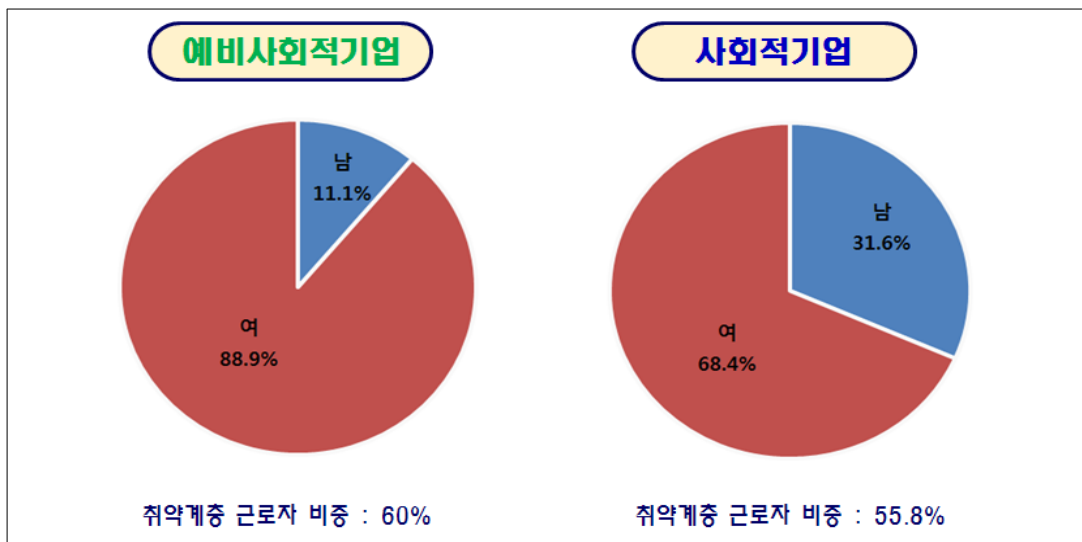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상시 자문 등 경영지원을 제공할 전문가인 프로보노가 필요한 분야를 묻는 조사항목에서는 마케팅/홍보, 회계/재무/세무, 사회적기업 인증 등의 분야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4. 인증 및 예비 사회적기업 정책수요 비교 분석

1) 고용현황

고용근로자의 남녀 성별 구성비에 있어서는 모두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비중은 예비사회적기업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취약계층 고용에 있어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이 60%로 나타나 사회적기업의 55.8%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기업 육성이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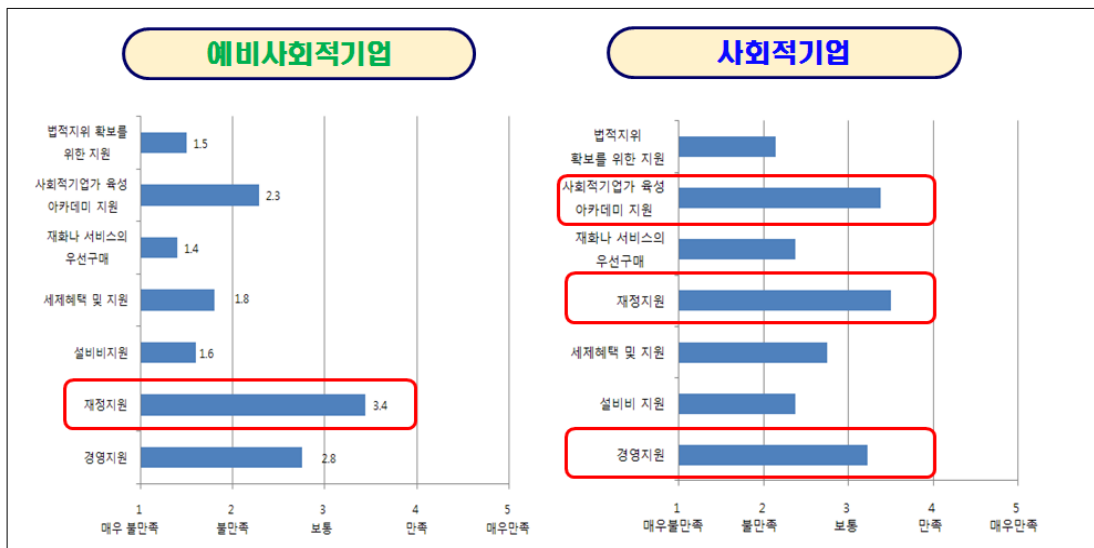
〈그림 28〉 고용현황 비교 분석

2) 지원자원에 대한 만족도

지원자원 만족도에 있어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재정지원 항목에서만 만족도가 보통을 넘어 선 반면,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사회적기업가 육성, 재정지원, 경영지원 등의 지원 항목에서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기타 설비비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인증 및 예비 사회적기업 모두에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바, 직접지원 방식이 아닌 융자 등의 간접지원방식을 통해 필요재원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림 29〉 지원자원 만족도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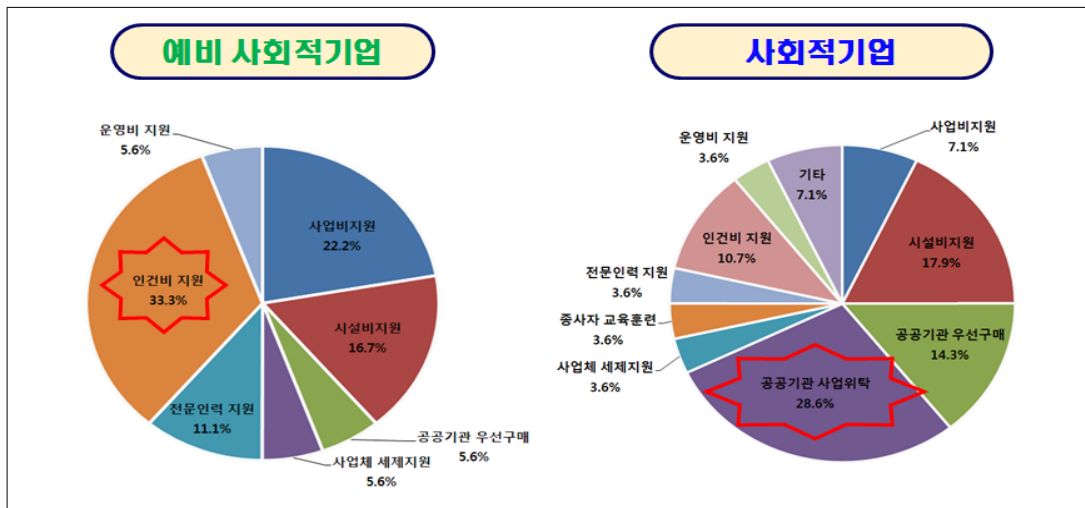
3) 정책지원 우선순위

정책지원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인건비와 같은 직접적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반면, 사회적기업은 판로확대 등 자립화 기반에 필요한 간접적 지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시설비 지원에 대해서는 예비와 인증 사회적기업 모두에서 정책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어 향후 시설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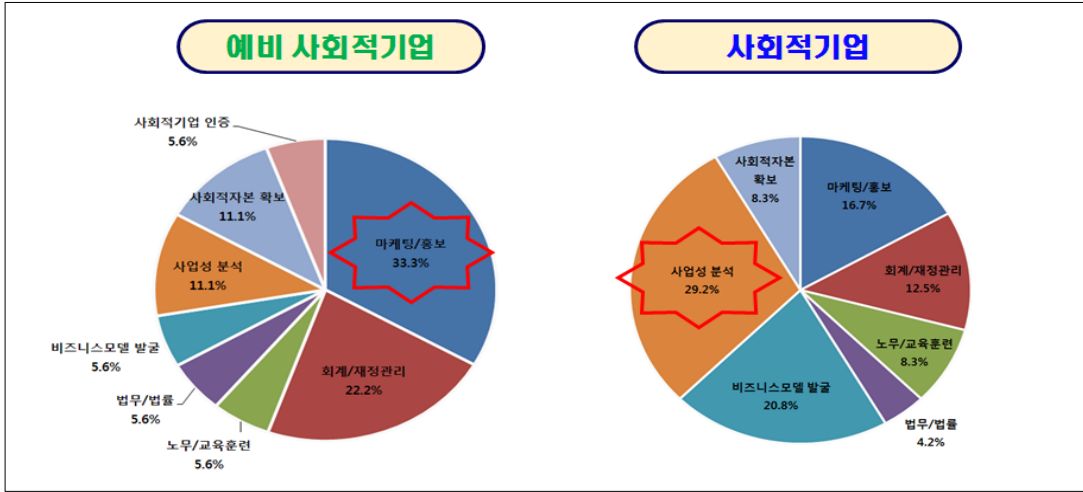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시설비 지원은 공공건물 임대나, 용자형식의 간접적 지원 등의 방법을 채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림 30〉 정책지원 수요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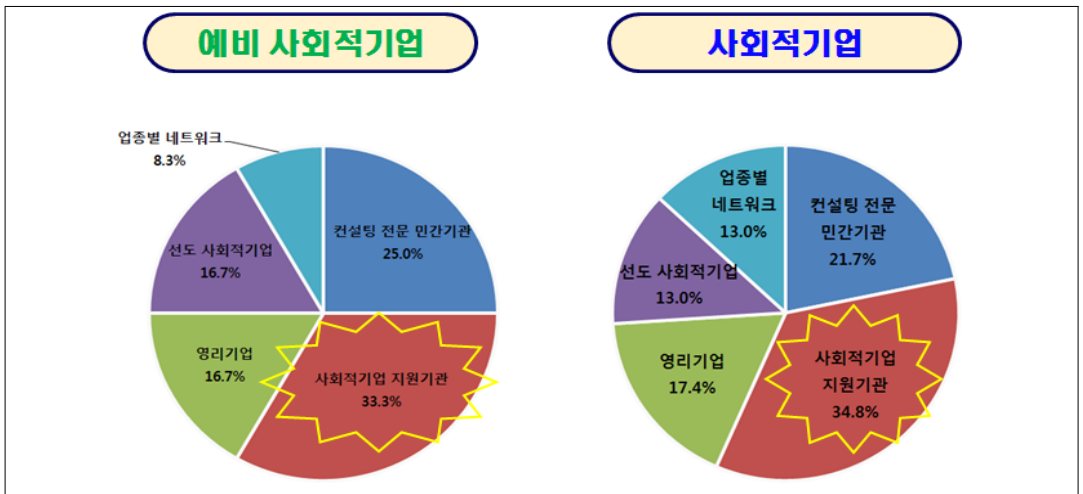
4) 컨설팅 지원 수요

컨설팅 지원 수요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마케팅/홍보 등 시장개척에 관한 컨설팅 지원을,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성 분석의 항목에서 가장 많은 컨설팅 수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시장의 신규 진입에 따른 판로개척으로서의 마케팅/홍보 등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반면, 사회적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성 분석 등 전문적인 정책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 31〉 컨설팅 지원 수요 비교 분석

컨설팅 지원방식 선호도에 있어서는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 모두에서 사회적기업지원기관에 의한 지원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컨설팅 전문 민간기관, 영리기업, 선도사회적기업, 업종별 네트워크의 선호도 순위에 있어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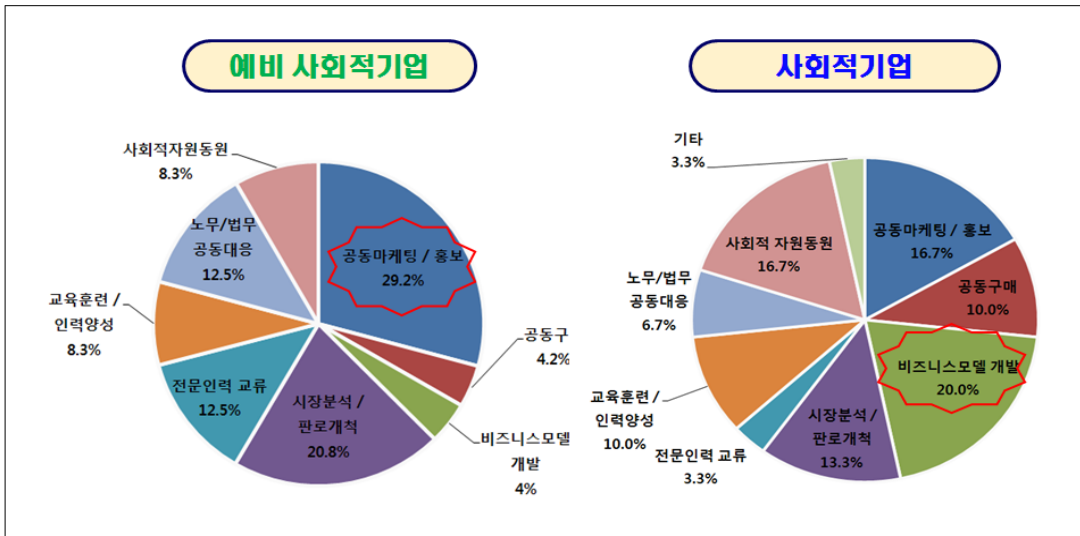
〈그림 32〉 컨설팅 지원방식 선호도 비교 분석

5)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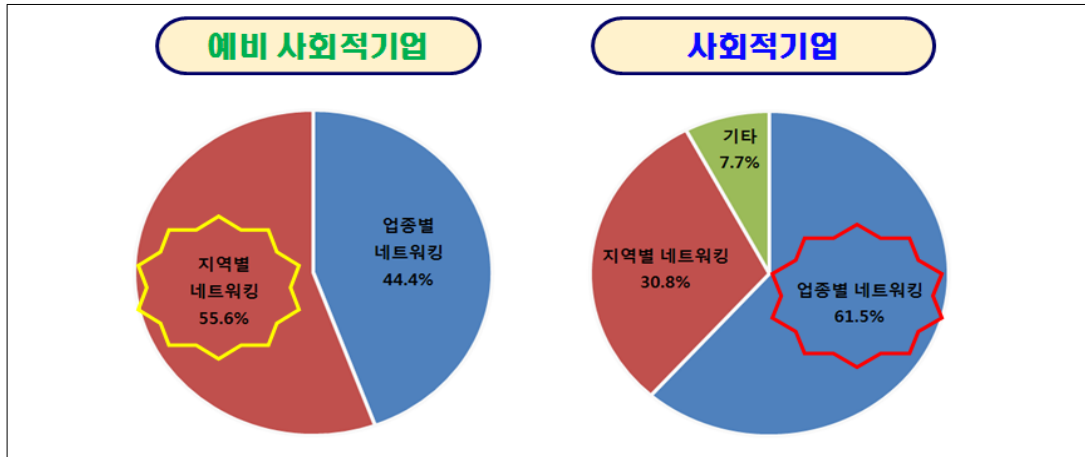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예비사회적기업들이 공동 마케팅/홍보 등을 위해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사회적기업들은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네트워크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로 응답하였다.

예비사회적기업들의 경우 신규 시장진입에 따른 판로개척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들간 마케팅/홍보 전략 등의 정보와 노하우를 교류하는 기회로서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들은 신규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따라 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에서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구축형태에 대한 선호도에서는 상반된 결과가 발생하였다.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역별 네트워크를 선호하는 반면, 사회적기업은 업종별 네트워크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3〉 네트워크 필요 분야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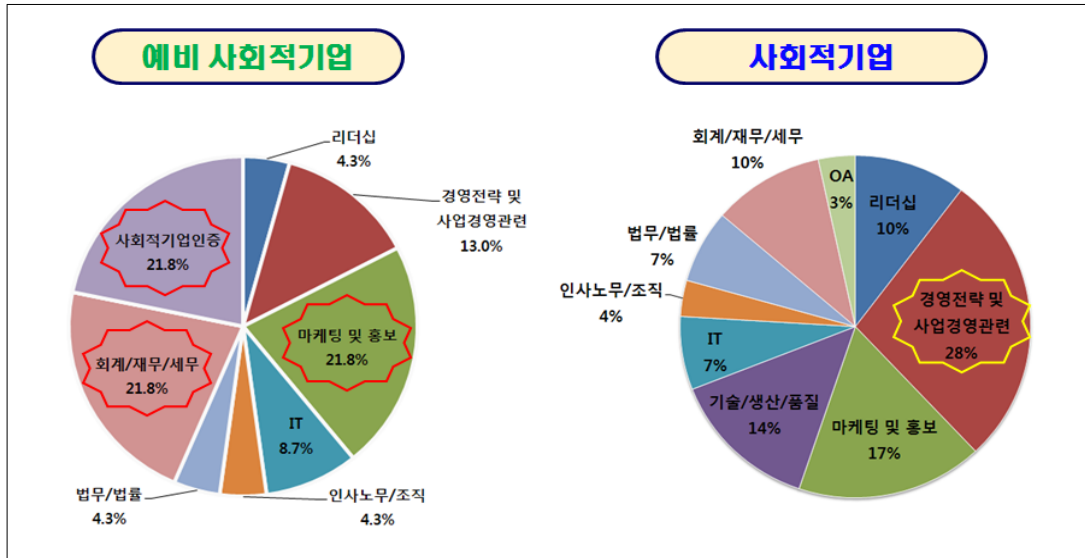
〈그림 34〉 네트워크 구축형태 선호도 비교 분석

예비사회적기업들의 경우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는 단계이므로 판로개척과 관련하여 인근 지역내 사회적기업들간 마케팅/홍보 전략 등의 정보와 관련 노하우를 상호 교류하는 기회로서 지역별 네트워크를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사회적기업들은 일반적인 정보보다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위한 시장 및 상품정보 교류, 공동 협력사업 추진 등 보다 전문적 분야에서의 네트워킹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업종별 네트워크를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프로보노 수요 분야

전문지식 기부자인 프로보노를 통해 상시 자문 등의 지원을 받고 싶은 분야와 관련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은 마케팅/홍보, 회계/재무/세무, 사회적기업 인증 등을 지원 수요분야로 응답한 반면, 사회적기업은 경영전략 및 사업경영, 마케팅/홍보, 기술/생산/품질 등에 대한 자문을 가장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이 기업으로서의 경영기반을 갖추기 위한 경영일반 분야에 경영지원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데 반해, 사회적기업의 경영지원 수요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 기술/생산 등 보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분야에서의 경영지원 수요가 포착되고 있다.



〈그림 35〉 프로보노 수요분야 비교 분석

5. 면담조사에 따른 정책 수요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자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사회적기업 관계자 대상 면담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첫째,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 확대를 요구하였다. 단지 사회적기업만의 네트워크가 아닌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의료법인, 자활공동체 등 다양한 참여가능 단체와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을 포함하는 통합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업종의 다양화이다. 충북지역의 경우 사회적기업의 업종이 가사간병, 환경 등의 업종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지역의 특화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업종의 사회적기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자체의 의지와 정책 집행기능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의 복지 서비스 수요를 충족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만큼 지자체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공공정책 집행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대와 담당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넷째,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정례화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였다. 타 지자체에서도 공모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의 특화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 복지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정책적 시도가 있는 만큼, 충북에서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공모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예비사회적기업과 고용부 인증 사회적기업은 기업의 성숙단계에 따라 정책적 지원 수요도 차이를 보이는 만큼, 신규 진입 기업과 성숙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등이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섯째, 지자체를 포함한 도민들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에 많은 초기투자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사회적기업 육성 및 활성화는 사회적기업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수반될 때 발전적 기반이 확대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 실무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설문조사에 반영되지 않은 애로사항과 정책수요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면담조사를 통해 추가된 정책지원 수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충북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설립이다. 현재 사회적기업 지원체계가 분산되어 체계적 지원이 어려운 만큼, 지역사회 현황을 파악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적기업 운영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충북형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둘째, 사회적기업 당사자 조직의 활성화 기반 조성이다. 사회적기업간 교류 및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당사자 조직인 충북사회적기업협의회의 법인격(사단법인 설립 승인) 부여 등 법적지위를 확보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기업 육성 펀드 조성이다. 자본력과 담보력이 약한 사회적기업의 초기투자자본 및 사업확대를 위한 시설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 조성

필요하다는 것이다.

넷째, 공공분야 민간위탁사업 활성화를 위한 진입장벽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충청북도 조례 제13조 ‘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조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업 입찰시 일반 상기업과 동일한 자격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위탁사업 참여가 어려운 만큼 공익성에 대한 가산점을 인정하는 자격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 사회적기업의 67%가 상법상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탁사업이 비영리법인 등의 자격기준을 고수하고 있어 원천적으로 시장진입을 차단당하는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섯째, 판로개척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의 개선을 요청하였다. 공공기관이 우선구매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오히려 꺼리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어 정책적 개선이 절실하며, 지자체의 우선구매 활성화를 기반으로 지역 민간부문으로의 판로개척이 보다 촉진될 수 있다고 하였다.

기타 상대적으로 참여인력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만큼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며, 사회적기업 인지도 향상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홍보사업 추진도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

제 V 장 결 론

1. 요약 및 시사점
2.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제V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1) 분석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이론적 배경을 통해 정리하였으며, 충북지역의 사회적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지역내 사회적기업 육성기반,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정책수요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충북지역 사회적기업 현황과 정책수요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충북지역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현황에 대한 분석내용이다. 2010년 현재 충북지역에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18개와 예비사회적기업 21개를 포함하여 총 39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소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952명의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먼저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를 살펴보면, 도내 12개 시군 중 7개 시군에만 분포되어 있으며 나머지 5개 시군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사회적기업의 68.5%, 고용인원의 77%가 청주, 청원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도내 전 지역에 걸쳐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북부권과 남부권에 대한 사회적기업 육성기반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조직형태별로는 상법상 회사인 사회적기업이 66.7%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통합된 혼합형의 사회적기업이 33.3%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많은 사회적목적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환경, 사회복지, 기타(제조 등)의 업종에 속한 사회적기업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근로자 규모에 따른 분류에서는 23~30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가장 많았다. 충북지역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

인원 비중은 전체 근로자의 53.2%로 나타나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를 살펴보면, 2010년 5월 현재 2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377명의 고용인원이 사회적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도내 12개 시군 중 청주, 충주, 제천, 청원, 음성 등 5개 지역에만 분포되어 있으며, 청주지역에 전체 예비사회적기업의 52.4%, 고용인원의 62%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고착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단계로 이해된다면 특정 지역에 예비사회적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현상은 도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충북지역 사회적기업 육성기반에 대한 분석내용이다. 충북지역내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충청북도, 청주시, 제천시가 전부이며, 나머지 10개 시군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앞에서 분석된 도내 사회적기업 분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조례 제정 등 지자체의 정책적 의지가 높은 지역에서는 사회적기업이 보다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역내 사회적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공공부문 주도의 정책 거버넌스로 충청북도에서는 2010년 초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부문 정책 거버넌스와는 별개로 도내에는 2006년부터 관련 네트워크가 발족하여 현재 민간부문 정책협의체로써 충북사회적기업협의회가 설립되어 있다. 충북사회적기업협의회는 사회적기업 상호간 정보 및 인력 교류, 공동 협력사업 추진, 정책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별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사회적기업지원기관으로는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10년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있다.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중요하며, 초기 사회적기업들이 자활공동체 등으로부터 출발한 사례가 많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지역내 자활공동체 현황을 파악하고 이 들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다. 2010년 3월말 현재 도내에는 59개의 자활공동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527명의 수급자가 참여하고 있다. 도내 자활공동체는 12개 시군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충주, 청원 등 일부지역에 대한 집중현상이 나타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자활공동체 대표들 중 고령자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사

업의 확장이나 신규사업 발굴은 사실상 외부 도움없이는 곤란한 상황이다. 또한 자활공동체 참여인력 규모의 측면에서도 43개 자활공동체가 5명이하의 수급자를 고용하고 있어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수요 조사의 분석결과이다. 사회적기업의 인증에 따른 만족도에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50%로써 불만족한다는 응답 14.3% 보다 높게 나타나 대체적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에 따른 정책적 지원에 대해 만족스러운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지원항목별 만족도 조사에서는 사회적기업가 육성, 재정지원, 경영지원 등의 3개 항목에서만 5점척도 기준 3점 이상으로써 만족한다는 결과를 보였을 뿐, 법적지위 확보, 재화 및 서비스 우선구매, 설비비 지원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불만족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사회적기업의 자기평가에 의한 경쟁력 수준의 분석에서는 고객만족도, 기술수준, 품질경쟁력 등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재정적기반, 생산규모, 원자재 조달기능, 사업기초인프라 등에서는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평가하였다.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한 항목들은 대부분 자금조달과 관련된 것으로써 시설투자 등의 필요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충북지역 사회적기업들의 정책지원 수요 선호도는 공공기관 사업위탁, 시설비지원, 우선구매 등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컨설팅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성분석, 비즈니스모델 발굴 등의 항목에서 높은 정책적 수요가 조사되었다. 컨설팅 지원은 사회적기업지원기관에 의한 제공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가장 큰 이유로 선택하였으며, 네트워크 구축형태로는 지역별 네트워크 보다는 업종별 네트워크에 대한 필요성이 더 크다고 응답하였다.

넷째, 예비사회적기업 정책수요 분석결과를 요약한 내용이다. 충북지역 예비사회적기업들의 창업후 경과년수는 2~3년이 가장 많았으며,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60%에 달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지원받고 있는 자원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하여 재정지원 항목에서만 5점척도 중 보통인 3점을 초과하여 만족한다는 결과를 보였을 뿐, 나머지 지원항목에 대해서는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보다 많았다. 예비사회적기업들은 향후 사회적기업 전환계획에 대해 응답기업 모두가 사회적기업 전환을 계획하고 있으며, 전환에 따른 준비기간으로 6개월 정도를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사회적기업 전환 사유와 관련하여 '사회적일자리사업 지원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지역 예비

사회적기업들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또 다른 재정지원 조달 창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움이 앞선다. 사회적기업 전환에 장애가되는 요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운영자금 및 투자자금 부족’ 항목을 1순위로 응답하여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사회적기업 전환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사회적기업들의 정책지원 수요 조사결과, 가장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인건비, 사업비, 시설비 등의 지원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예비사회적기업들이 간접적인 지원보다는 재정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을 더 필요로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부 재정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컨설팅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마케팅/홍보, 회계/재정관리, 사회적자본 확보, 사업성 분석 등의 순으로 정책수요가 높았다. 컨설팅 제공 방식에 대한 선호도에서는 사회적기업과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지원기관에 의한 컨설팅 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네트워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동마케팅/홍보를 가장 필요한 이유로 선택하였으며 네트워크 구축형태로는 사회적기업과는 다르게 지역별 네트워크를 보다 더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전문가 간담회 및 사회적기업 실무자 면담조사에 따른 정책지원 수요는 다음과 같다.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 통합적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기업 업종의 다양화, 지자체 의지 및 정책 집행기능 강화, 정례화된 사회적기업 육성 시스템 구축,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정책 지원, 사회적기업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 개선 등이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사회적기업 실무자 면담조사에서는 충북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설립, 사회적기업 당사자 조직 활성화 기반 조성, 사회적기업 육성 펀드 조성, 공공분야 민간위탁사업 활성화를 위한 진입장벽 해소,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지자체 차원의 홍보사업 추진 등이 주요한 정책지원수요로 도출되었다.

2) 정책적시사점

앞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충북지역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대가 필요하다. 도내 2개 시군만이 조

례를 제정하고 있는 만큼, 나머지 10개 시군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도록 유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사회적기업 전담부서 설치 또는 사회적기업 전담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부문의 정책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충북 특화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체계 시스템화 필요하다. 충북 특화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체계를 시스템화하여 충북형 사회적기업 육성 기반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적기업 투자펀드 조성 등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재원을 조성하고 공공 및 민간 자원의 연계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자본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과 참여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 개선과 사회적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홍보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민간부문의 사회적기업 연계 참여 활성화를 위한 후견인제도 시행 및 사회적기업 연계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넷째, 사회적기업 내·외부 경쟁력 강화 및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 일반 기업체보다 경쟁력이 취약한 사회적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와 자립화 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사회적기업의 경영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유관기관(단체) 네트워크 확대 및 파트너십 활성화가 필요하다.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또는 공공부문의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한 선결요건이 되는 바,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자활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산업체, 기업지원기관, 지자체, 대학 등 다양한 기관(단체)이 참여하는 통합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명확한 역할분담 및 지속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참여 기관들간의 파트너십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1)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적기업 현황 분석에서 도내 특정지역에의 사회적기업 및 고용인원 집중은 어느 지역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가에 따라 나타난 현상일 것이다. 현재 충북지역은 단지 2개 시군만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 12개 시군 전체로 조례제정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자체 사회적기업 전담부서 설치 또는 사회적기업 전담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부문의 정책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충청북도의 경우 민선5기 조직개편을 통해 일자리창출과를 신설하고 사회적기업 전담자를 두고 있으나 시군 등 기초지자체에서는 사회적기업 업무담당자가 없거나 타 업무와 겸직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전달체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이다. 민간부문의 사회적기업 육성네트워크도 중요하나 그 이전에 공공부문의 정책전달체계를 명확히 구축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2) 명확한 비전과 목표 설정

충북지역 사회적기업 육성을 선도하기 위한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적기업 본래의 목적인 사회적목적과 지속가능한 경영조직으로서의 경제적 목적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목표는 정량적 목표와 정성적 목표가 함께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충북의 경우 민선5기 공약과제로서 사회적기업 100개 육성이란 구체화된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민선5기 충북 전체의 총량적 목표수치로 어떤 대상, 어떤 지역에 몇 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세분화된 목표수치까지를 설정하는 것이 실천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1개 기초자치단체 당 10개의 사회적기업 육성 또는 1 시민사회단체 1사회적기업 육성 등의 목표를 수립하는 방안은 기초지자체와 시민단체 등

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충북지역의 특화자원이나 지역적 특성을 연계하여 목표수준을 정하는 방법도 고려한다면 지역내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업종 분야별 목표설정도 가능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가치 실현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수혜자 수 등의 목표도 설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체화된 목표를 통해 취약계층의 고용창출 기회 확대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증대라는 사회적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3) 충북 특화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체계 시스템화

충북 특화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체계를 시스템화하여 충북형 사회적기업 육성체계를 선진화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충북지역의 사회적기업은 환경,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다양한 업종의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은 지역의 특화된 자원을 기반으로 일자리 창출 모델을 개척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네트워크와 정보교류를 통해 네트워크형 사업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는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자활공동체, 시민사회단체, 지역별 자립형 공동체 사업단, 지자체, 산업체, 전문가 집단 등이 함께 참여하여 지혜를 모으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충북지역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은 단계적 접근방식을 취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초기에는 공공기관 위탁사업을 중심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 확산하고 단계적으로 시민사회단체 등이 새로운 지역 특화형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사업화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부처별로 시행되고 있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들을⁷⁾ 통합관리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연계, 발전시키는 전략을 통해 사회적기업 육성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위탁가능 사업 및 정부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대한 정보는 민간부문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지자체내에 정부지

7)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도농교류협력사업,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이상 농림수산식품부),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원사업,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이상 환경부), 정보화마을조성사업,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이상 행안부), 문화역사마을가꾸기 (문화관광부), 지역산업진흥사업(지식경제부) 등이 있다.

원 일자리사업 추진 또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실국이 참여하는 일자리창출 T/F의 구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시스템 구축도 시급한 사안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초기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바, 지자체의 정책지원 시스템을 정례화하여 안정적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수요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예비사회적기업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정책지원은 재정지원이다. 따라서 지역 예비사회적기업 공모를 통해 우수한 사업모델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지속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은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사업으로 끝나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육성시스템 구축 및 효율적 재원 활용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투자재원 조성과 다양한 공공 및 민간 보유자원의 연계 활용을 통한 사회적 자본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적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지자체는 물론 시민단체, 산업체, 도민 등 다양한 민간주체들이 기금조성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 육성 기금은 지자체의 재원부담을 줄이고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정책이 시스템적으로 착근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해서는 하드웨어적 시스템 구축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기업의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유능한 선도인력을 양성하는 정책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개설 등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청년인력이 사회적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한다면 충북지역의 사회적기업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4)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과 참여문화 조성

사회적기업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 개선과 사회적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현재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가치, 사회적기업의 현황에 대한 정보가 도민들에게 홍보

되지 않아 사회적기업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구분할 것 없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자원을 연계하고 사회적기업의 활동영역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홍보사업 및 교육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적기업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알리고 우리지역의 사회적기업 현황을 소개하는 홍보책자의 발간, 지역내 사회적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등을 소개하는 종합 홍보관 운영, 자치연수원, 경제교육센터 등을 활용한 도민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충북지역은 사회적자원 연계가 미흡하고 민간부문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참여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민간부문의 사회적기업 연계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후견인제도 시행, 사회적기업 연계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등의 시책 추진도 필요하다.

우선 사회적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자원 연계를 위해서는 후견인제 제도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 담당관계, 1사회적기업-1산업체, 1사회적기업-1대학, 1사회적기업-1시민단체 등의 1촌 맺기 릴레이 운동을 펼쳐 다양한 민간주체들이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내에 진입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 교육, 정보교류, 참여유인 등의 기능이 통합적으로 작용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민간주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기업 통합 포럼을 운영하는 방안도 거시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추가하여 도민들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사회적기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기업 대전 개최 등 도민과 함께 하는 교육 및 홍보행사도 개최할 필요가 있다.

5) 사회적기업 내·외부 경쟁력 강화 및 전문성 제고

일반 기업체보다 경쟁력이 취약한 사회적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와 자립화 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판로개척이다. 정부의 재정지원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내에 사회적기업은 자생력을 확보

하여야 하는 데 실제적으로는 판로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정부재정지원이 끝날 경우 사업이 종결될 수 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역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우선구매 촉진과 공공부문 위탁사업 확대 등을 통한 판로개척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원정책 중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제도적 개선부분이다. 현재 사회적기업 조직형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법상 회사인 사회적기업의 경우 사회적목적 실현을 위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선구매, 공공부문 사업 위탁 등에서 일반 영리기업과 동일시 되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실례로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의 경우 상법상 회사인 사회적기업은 우선구매의 계약대상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공부문 위탁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신청 자격조차도 부여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아무리 좋은 판로개척 지원정책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제도적 시스템이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쓸모없는 지원정책이 될 뿐이다. 따라서 지자체가 직접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수 없는 구조라면 행안부 등 관련부처에 우선구매, 공공부문 사업 위탁 등의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 다음으로 사회적기업의 경영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 내부 구성원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의 지원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경영혁신을 위한 지원정책의 추진은 지자체가 할 수 없는 영역이므로 충북형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선정하여 지속적인 경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다만,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특정지역에 설치될 경우 접근성, 연계자원 부족 등의 문제로 정책적 소외지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북부권, 남부권 거점대학 등을 연계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지원기관이 되도록 지자체에서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공모시 자격사항에 이러한 사항을 명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역량과 자생적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평가시스템 구축 및 성과공시제도 운영 등 투명성 제고시책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은 외부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기업 내부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 지며, 사회적목적 달성과 투명한 경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수반될 때 자연스럽게 그것에 대한 평가가 뒤 따르는 것이다. 따라서 외부감사 제도화, 매년 성과공시, 평가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함께 추구하여야 한다.

6) 유관기관(단체) 네트워크 확대 및 파트너십 활성화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또는 공공부문의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한 선결요건이 된다.

현재 공공부문 네트워크와 민간부문 네트워크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책의 총괄 기획 및 조정이 불가능하며, 정책적 효율성도 담보할 수 없는 거버넌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바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자활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산업체, 기업지원기관, 지자체, 대학, 영농조합법인, 자립형 마을 공동체 등 다양한 기관(단체)이 참여하는 통합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명확한 역할분담 및 지속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참여 기관들간의 파트너십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혜규 외(2007), 사회서비스 확충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곽선화(2009), 2008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노동부.
- 고용노동부(2008),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08~2012).
- 김성기(2009), “사회적기업 특성에 관한 쟁점과 함의”, 사회복지정책 제36권 제2호,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김영철·이민환(2007), “양극화와 사회적일자리 사업 : 사회적 경제의 관점에서”, 지역사회연구 제15권 제2호.
- 노대명(2008), 한국의 사회적기업과 사회서비스, 보건복지포럼.
- 마성균(2009) “특집 :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 지속가능 일자리 등 취약계층 위한 대안 필요”, 도시문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박가열 외(2009), 진로교육의 사회적기업화 방안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 박찬임(2008), “사회적기업 창출 및 육성을 위한 과제”, 월간 노동리뷰 2008년 7월호, 한국노동연구원.
- 백학영 외(2009), “자활공동체의 사회적기업 전환 가능성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36권 제3호,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심창학(2007), “사회적기업의 개념 정의 및 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 유럽의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23권 제2호.
- 양용희 외(2008), 충청·호남지역 사회적기업 욕구조사 보고서.

- 김동열(2010),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5대 과제”, 경제주평, 통권 396호, 현대경제연구원.
- 윤정향(2007),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고용정보원.
- 이광우(2009),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비영리학회 학술대회 2009권 1호, 한국비영리학회.
- 이광택(2008),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및 시행 후의 발전방향”, 법학논총 제20권 제2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용재 외(2009), 충남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 임준홍(2009), “충청남도의 사회적기업 육성 전략”, 충남리포트, 충남발전연구원.
- 장원봉(2006), “사회적 경제의 의미와 발전과제” 도시와 빈곤, 통권 제80호, 한국도시연구소.
- 장원봉(2006),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제, 나눔의 집.
- 장원봉(2008), “새로운 고용전략으로서 사회적 경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44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병순 외(2007),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정선희(2004), 사회적기업, 다우.
- 조영복 외(2009), 사회적기업의 국가별 정책과 전략, (사)사회적기업연구원.
- Borzaga, C. and Defourny, J.(2001),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NewYork.
- Chiu, Stephen W. K.(2006) “Three Worlds of Social Enterprise.” Speech to the Conference on Social Enterprise, Hong Kong.
- Defourny, J.(2001), "Introduction: from Third Sector to Social Enterprise",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Routelege.

- Defourmy, J.(2008), "확장된 유럽에서의 사회적기업 : 개념과 현실“, 국제
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 Dees, J. G. and Anderson, B. B.(2003), "For-Profit Social Ventures", In M.
L. Kourilsky & W. B. Walstad(Ed.), Social Entrepreneurshi
Senate Hall Academic Publishing.
- Kerlin, J. A.(2006), "Social Enterprise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Understanding and Learning from the Differences,”
Voluntas, Vol. 17, No. 3.
- OECD(1999), Social Enterprise, Paris, OECD.
- Wallace, S. L.(1999), "Social Entrepreneurship : The Role of Social Purpose
Enterprise in Facilitating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Developmental Entrepreneurship. 4, 2.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www.socialenterprise.go.kr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

부 록

[부표 1] 주요 선진국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비교

[부표 2] 주요 선진국 분야별 사회적기업 사례

[부표 3] 충북지역 사회적기업 정책수요조사 설문지

[부표 4] 충북지역 예비사회적기업 정책수요조사 설문지

[부표 1] 주요 선진국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비교

국가명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조직체제와 육성전략에 따른 체계적 지원 (통상산업부 중소기업국 산하 사회적기업청, '06년 사회적 기업 5만5천개) -1997년 복지제도 민영화 이후 정부 서비스의 민간 이양, 사회적 기업 활성화 -지역공동체이익회사(CIC)법 제정, 간소한 사회적기업 설립·운영모델 창출 * CIC법 제정 2년이 경과되기 전에 2천여개의 CIC 설립 다만, 동 법은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참여장치 부재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영리조직의 비즈니스 중심 상업성과 영리기업의 활발한 자선활동이 원동력 -농촌지역 협동조합(공동구매, 공동마케팅)과 종업원지주제도(ESOP) 지원 -1996년 복지제도 민영화 정책 이후 많은 비영리기관들이 수익사업에 진출 -비영리부문의 전체 수입 가운데 수익금이 57%(선진국 45%)로 매우 높음 자선기부금도 13%(선진국7%)로 높으며, 정부지원금은 31%(선진국 48%) -높은 수준의 자선기부금, 공공자선단체 지원을 위해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
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헌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은 다수의 특별한 권리와 지위 누림 -1991년 유럽 최초 사회적기업 법제화(‘사회적 협동조합’)가 기폭제 역할 -1970년대 후반 새로운 사회복지 수요(홈케어, 재가복지)에 협동조합이 대응 -사회적기업 부문의 조직적 유연성 확보(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 -협동조합 연구기관인 ‘킨소시엄’을 활용 교육훈련, 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 -稅制 혜택, 공장 폐쇄 시 직원들의 협동조합이 기업 인수 가능
폴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회, 재단, 사회적 협동조합 중심(제3섹터). 분권화와 지방자치에 기반 -높은 실업률과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고용창출의 원천으로서 사회적기업 지원 -‘03년 공익활동과 자원봉사활동 법, 사회적 고용법, '06년 사회적 협동조합법 -협회와 재단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세금감면, 보조금 지급 등 법적인 틀 구비 -‘바르카재단’과 ‘사회통합센터’ 중심으로 국제네트워크 활용, 사회적기업 성장 -사회적 협동조합과 이에 참여하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보조금 지급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기업 부문내의 조직간 통합 장려. 건실한 사회적 경제(전체 노동력의 7%) -법적 구조를 간소화함으로써 다양한 조직의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이 용이 -‘서비스 바우처’ 등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경제적 장치 구비 -이태리의 사회적 협동조합을 참고로 ‘집단이익 협동조합’(SCIC) 모델을 확충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회 및 협동조합(자조) 중심. 기업적 접근 보다는 복지기관적 접근이 우세 -사회적기업 지원의 動因은 실업감소, 장애인 노동통합, 빈곤과 인종갈등 해소 -시장거래가 금지되는 한시적 근로제 도입 등이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제약 -조직간 융합 및 혁신을 저해하는 법적·행정적 구조 -‘CAP-Market’:소규모 슈퍼마켓 연결, 전국적 브랜드화(장애인을 2/3가량 고용)
벨기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기업의 범위가 넓음 (사회적 목적기업과 자활지원기업을 포괄하는 방식) -서비스 바우처 등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경제적 장치 설치 -재정적 혜택의 폭과 취약계층 고용률이 연동된 노동통합기업 지원 * 자활지원 사회적기업은 급여세(payroll taxes) 면제를 받는 대신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야 함 (급여세 면제 : 설립 첫해 100%, 다음 해부터 75%, 50%, 25% 등 단계적 조정, 취약계층 고용비율 : 30%→40%→50% 등 단계적 확대)

자료 : 고용노동부(2008), 조영복 외(2009)를 참고로 재작성

[부표 2] 주요 선진국 분야별 사회적기업 사례

분야	국가	사례
對人 (Human) 서비스	오스트리아	Children's Group: 부모의 활발한 참여로 지원되는 보육 서비스
	프랑스	ACCEP(부모가 선두에 서는 보육조직): 일부 부모가 이끌고 관리하는 보육서비스로 전국 네트워크를 형성
	영국	home Care 협동조합: 파트타임으로 구성원을 고용하는 협동조합으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여성을 주로 고용함
	덴마크	Social Residence(사회적 주거): 불우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기존 기관의 대안으로 디자인된 주거 기관으로서 훈련 및 돌봄 서비스에 초점
	스웨덴	FKU: 정신적 장애가 있는 개인의 재활과 재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적 단위의 지역개발 협동조합
	이태리	A타입 사회적 협동조합: 보건, 교육, 훈련 또는 개인서비스 분야에서 활동하는 협동조합 형태임
	포르투갈	장애아동의 훈련과 재활을 위한 협동조합: 1985년 전국적 연합으로 통합됨
노동을 통한 훈련과 통합	미국	루비콘 베이커리: 장애인을 고용하여 제빵기술을 가르치고, 빵을 판매
	벨기에	남부의 OJT기업과 노동통합기업, 북부의 노동통합기업과 사회적 워크숍: 다양한 지역에서 지원하는 노동통합 기업은 시장지향성이 높고 장기고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이태리	B타입 사회적 협동조합: 위험한 상황에 놓인 개인의 노동통합 분야에서 활동하는 협동조합. 30%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고용
	독일	재정지원을 일부 받는 시장지향적 사회적 기업: 기존 민간 기업이나 신생 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장기실업자의 사회적·직업적 통합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룩셈부르크	환경, 농업, 건설, 쓰레기 재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노동 및 경제적 활동을 통해 구성원에게 통합을 제공하는 협회(또는 노동조합): 대부분 국가에서 보조하는 파일롯 프로젝트임
	스페인	장애자 또는 실업자를 위한 노동통합 기업: 장기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보다는 타깃그룹을 기존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통합시키기 위해 디자인된 과도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지역 개발	독일	CAP-Market: 대형 할인점의 입점으로 위기에 처한 농촌과 도시의 소규모 슈퍼마켓을 인수하여 식료품을 주로 취급하는 전국 브랜드를 형성. 장애인을 2/3가량 고용
	핀란드	지역별 협동조합 개발 에이전시(CDA): 지역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협동조합은 그 구성원의 용역을 다른 기업으로 하청 준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근로자 협동조합과 다름
	네덜란드	지역관리기업(NME): 근접서비스를 개발하는 독립기업으로, 쇠퇴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도시 인프라와 개인주택의 유지관리·개선하거나, 해당지역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급일자리를 제공
	그리스	농장관광협동조합: 관광객이 오는 시골지역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이 세운 협동조합으로 숙박, 식사, 작은 공예품 서비스 제공
	아일랜드	지역공동체 개발기업: 사회적 주택, 노동통합, 신용조합, 근접서비스(proximity service)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자료 : Defourny, J., 국제노동브리프(2008) 내용을 토대로 재작성

[부표 3] 충북지역 사회적기업 정책수요조사 설문지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수요조사	조사표번호
------------------------	-------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에서는 2009년 5월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민선5기 충북지역 사회적기업 100개 육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원에서는 충북지역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충북지역 사회적기업 현황 및 육성방안” 기본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도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책수요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충북지역 (예비)사회적기업들의 운영 현황 및 정책지원 수요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향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귀 사업체(단체)에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최종보고서 작성 전까지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 내용의 결과는 통계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귀 사업체(단체)의 정책지원 수요가 충청북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에 반영되어 우리 지역내 사회적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이니 만큼 사업체(단체)의 대표(또는 실무책임자)께서 신중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 자료는 아래 조사담당자에게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 7.

조사기관 : 충북개발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조사담당 : 충북개발연구원 [주소 : (360-76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8]

- 조사담당 : 유효영연구원 (043-220-1180, hrb3756@cri.asia)

- 연구책임 : 함창모박사 (043-220-1117, cmham@cri.asia)

1. 사업체 일반 및 운영 현황

다음은 조사대상 사업체의 일반적 특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한 항목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직접 기입 또는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 사업체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 ① 청주시 ② 충주시 ③ 제천시 ④ 청원군
 ⑤ 보은군 ⑥ 옥천군 ⑦ 영동군 ⑧ 진천군
 ⑨ 괴산군 ⑩ 증평군 ⑪ 음성군 ⑫ 단양군

2. 귀 사업체의 창업연도는 언제입니까? ()년

3. 귀 사업체의 설립자본금은 얼마입니까? ()만원

4. 귀 사업체의 설립자본금 구성비율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성비율의 합계가 100%가 되도록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구성원 출자 : ()% ② 관련기관(공익) 출자 : ()%
 ③ 관련개인(공익) 출자 : ()% ④ 외부투자 : ()%
 ⑤ 차입 : ()% ⑥ 기타 : ()%

5. 귀 사업체의 근로자 현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 유급근로자 수(4대보험 가입자) : 남자 ()명, 여자 ()명

5-2 유급근로자 근로 형태 :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5-3 유급근로자 중 취약계층 근로자 수 : ()명

6. 귀 사업체의 취약계층 근로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대상은?

- ① (조건부)수급자 ② 저소득층 ③ 장애인
 ④ 고령자 ⑤ 장기실업자 ⑥ 기타(직접기입 :)

7. 귀 사업체의 사회서비스 제공 현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1 전체 서비스 수혜자 규모 : ()명
- 7-2 취약계층 수혜자 규모 : ()명
-
8. 직전연도(2009년 결산)기준 연간수입(총사업비) : ()만원
- 8-1 사업수입(순수매출액) : ()만원
- 8-2 비사업수입(국고보조금, 민간지원금, 후원금 등) : ()만원
- ※ 차입금 또는 차입성 지원금은 비사업수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9. 직전연도(2009년 결산)기준 경영성과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9-1 흑자 또는 적자 여부 : ___ ① 흑자 ___ ② 적자
- 9-2 당기순이익(손실) : ()만원
- 9-3 인건비 : ()만원
-
10. 직전연도(2009년 결산)기준 재무구조 현황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자산 : ()만원 ② 부채 : ()만원 ③ 자본 : ()만원
- ※ 부채 및 자본의 합계는 자산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
11. 귀 사업체의 설립 모태는 무엇입니까?
- ___ ① 개인 ___ ② 정부 ___ ③ 민간기업 ___ ④ 자활후견기관
- ___ ⑤ 사회복지기관 ___ ⑥ 시민단체 ___ ⑦ 자활공동체
- ___ ⑧ 기타(기입 :)
-
12. 귀 사업체의 해당하는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은 무엇입니까?
- ___ ① 일자리 제공형 ___ ② 사회서비스제공형 ___ ③ 혼합형
- ___ ④ 기타형

13. 귀 사업체의 법적근거에 따른 조직형태는 무엇입니까?

- _____ ① 상법상 회사 _____ ② 민법상 법인 _____ ③ 민법상 조합
_____ ④ 기타 비영리법인 및 단체

14. 현재 귀 사업체의 주된 업종구분은 무엇입니까

- _____ ①교육 _____ ②보건 _____ ③사회복지 _____ ④환경(재활용포함)
_____ ⑤문화, 예술, 관광, 체육 _____ ⑥보육 _____ ⑦산림보전 및 관리
_____ ⑧간병, 가사지원 _____ ⑨ 제조업
_____ ⑩기타 (직접기업 : _____)

15. 현재 귀 사업체의 주요 사업내용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II. 사회적기업 인증 사유 및 만족도

16. 귀 사업체의 사회적기업 전환 사유는 무엇입니까?

- _____ ①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하여 _____ ②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_____ ③영리목적의 수익증대를 위하여 _____ ④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서
_____ ⑤기업 마케팅 및 홍보 강화를 위해서 _____ ⑥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
_____ ⑦기타 (직접기업 : _____)

17. 사회적기업 전환에 따른 대·내외적 효과를 사회적기업 전환 이전과 비교하는 경우 그 개선정도를 항목별로 체크하여 주십시오.

대·내외적 효과	①크게 감소	②감소	③변화 없음	④증가	⑤크게 증가
(1) 일반인/기관 관심					
(2) 행정업무					
(3) 재정지원(정부)					
(4) 재정지원(정부 외)					
(5) 사업위탁(우선구매)					
(6) 사업연계					
(7) 경영지원					
(8) 일자리사업 참여					
(9) 사업 전문성					
(10) 조세지원					
(11) 조직혁신					
(12) 종사자 자긍심					

18. 사회적기업 인증 후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 ① 매우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만족

19. 위에서 만족하거나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이유를 간략하게 기입하여 주십시오.

Ⅲ. 사회적기업 지원 수혜내용 및 만족도

20. 현재 귀 사업체(단체)가 지원받고 있는 지원내용을 적어주십시오.

지원기관	지원내용
정부(고용노동부 등)	
지방자치단체	
일반(연계)기업	
민간단체	

21. 현재 기업이 지원받고 있는 지원자원의 만족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지원 사항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경영지원(경영컨설팅 및 회계프로그램)					
설비비 지원 (부지구입비, 시설비등)					
세제혜택 및 지원					
재정지원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등)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사회적기업가 육성 아카데미 지원					
법적지위 확보를 위한 지원					
기타()					

22. 지원받고 있는 자원이 만족 또는 만족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IV. 경쟁력 수준 및 강약점

23. 아래 항목에 대한 귀 사업체의 경쟁력 수준을 체크하여 주십시오.

경쟁력 지표	①매우 낮음	②낮음	③보통	④높음	⑤매우 높음
(1) 전반적 경쟁력					
(2) 사업 기초인프라					
(3) 품질 경쟁력					
(4) 가격 경쟁력					
(5) 기술수준					
(6) 판로확보					
(7) 영업활동					
(8) 생산규모(시설)					
(9) 원자재 조달 기능					
(10) 재정적 기반					
(11) 고객 만족도					

24. 아래 항목 중 귀 사업체가 인지하고 있는 강점(우월적 지위) 3개를 골라 적어 주십시오.

①품질 ②가격 ③인적자원(인건비) ④인지도 ⑤틈새시장 공략 ⑥차별화된 전략 ⑦기술적우위 ⑧경영역량 및 노하우 ⑨시장변화 대응 ⑩마케팅능력 ⑪연구개발력 ⑫지리적위치 ⑬디자인우월성 ⑭기타(직접기입)
--

강점 1 :

강점 2 :

강점 3 :

25. 아래 항목 중 귀 사업체가 인지하고 있는 약점(취약한 부분) 3개를 골라 적어 주십시오.

- ①품질 ②가격 ③인적자원(인건비) ④인지도 ⑤틈새시장 공략 ⑥차별화된 전략
 ⑦기술적우위 ⑧경영역량 및 노하우 ⑨시장변화 대응 ⑩마케팅능력 ⑪연구개발력
 ⑫지리적위치 ⑬디자인우월성 ⑭기타(직접기입)

약점 1 :

약점 2 :

약점 3 :

V. 정책적 지원 수요

26. 현재 귀 사업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요구분야를 우선순위에 따라 3가지를 골라 적어 주십시오. (기타의 경우 직접 내용을 기입)

- ①사업비지원 ②시설비지원 ③공공기관 우선구매 ④공공기관 사업위탁 ⑤사업체 세제지원 ⑥연계기업 세제지원 ⑦종사자 교육훈련 ⑧전문인력 지원 ⑨인건비 지원
 ⑩ 운영비 지원 ⑪컨설팅 지원 ⑫지역기업(기관) 연계 ⑬업종별네트워크운영 지원
 ⑭ 기타(직접기입)

1순위 :

2순위 :

3순위 :

27. 현재 귀 사업체가 인지하고 있는 경영컨설팅 지원의 필요성 정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_____ ① 불필요 _____ ② 부분적 필요 _____ ③ 매우 필요

28. (위 27항목에서 부분적 필요 또는 매우 필요를 선택한 응답자만 답변)
 귀 사업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컨설팅 지원 수요 분야 3가지를 우선순위에

따라 적어 주십시오.

①마케팅/홍보 ②회계/재정관리 ③노무/교육훈련 ④법무/법률 ⑤비즈니스모델발굴
⑥사업성 분석 ⑦사회적자본 확보 ⑧ 기타(직접기입)

1순위 :

2순위 :

3순위 :

29. 귀 사업체에서는 다음의 컨설팅 제공방식 중 어느 방식을 선호하는지
체크하여 주십시오. (중복체크 가능)

___ ① 컨설팅전문민간기관 ___ ② 사회적기업지원기관 ___ ③ 영리기업
___ ④ 선도 사회적기업 ___ ⑤ 업종별 네트워크
___ ⑥ 기타()

30. 현재 귀 사업체가 인지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네트워킹의 필요성 정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___ ① 불필요 ___ ② 부분적 필요 ___ ③ 매우 필요

31. 귀 사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네트워킹 분야는 무엇입니까?
(중복체크 가능)

___ ① 공동 마케팅/홍보 ___ ② 공동구매 ___ ③ 비즈니스모델 개발
___ ④ 시장분석/판로개척 ___ ⑤ 전문인력 교류 ___ ⑥ 교육훈련/인력양성
___ ⑦ 노무/법무 공동대응 ___ ⑧ 사회적자원 동원 ___ ⑨ 기타()

32. 귀 사업체가 선호하는 네트워킹 형태는 무엇입니까?

___ ① 업종별 네트워크 ___ ② 지역별 네트워크 ___ ③ 기타()

33. 귀 사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보노(전문봉사자)는 어떤 분야입니까?

- ___ ① 리더십(대표 및 팀장 리더십, 대인관계, 의사소통 기술, 스피치, 멘토링 등)
- ___ ② 경영전략 및 사업경영 관련(신규사업 개발/기획, 사업계획, 타당성분석 등)
- ___ ③ 마케팅 및 홍보(고객관리, 광고 및 홍보전략, 디자인, 영업전략, 판촉전략 등)
- ___ ④ 기술/생산/품질(신제품/신기술 개발, 품질관리, 원가절감, 공정개선 등)
- ___ ⑤ IT (홈페이지 제작/관리, IT전략, 온라인 마케팅, 쇼핑몰 등)
- ___ ⑥ 인사노무/조직(근로계약, 조직혁신, 기업문화, 직무분석, 성과보상 등)
- ___ ⑦ 법무/법률(계약서 작성, 특허 및 지적재산권, 법인설립, 정관 수립 등)
- ___ ⑧ 회계/재무/세무(회계관리, 세무일반, 자금조달 및 투자유치, 재무관리 등)
- ___ ⑨ OA(사무자동화 :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동영상 제작 등)
- ___ ⑩ 기타 ()

34. 기타 귀 사업체에서 필요한 정책적 지원 수요가 있다면 사소한 것이라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표 4] 충북지역 예비사회적기업 정책수요조사 설문지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수요조사	조사표번호
--------------------------	-------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에서는 2009년 5월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민선5기 충북지역 사회적기업 100개 육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원에서는 충북지역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충북지역 사회적기업 현황 및 육성방안” 기본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도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책수요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충북지역 (예비)사회적기업들의 운영 현황 및 정책지원 수요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향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귀 사업체(단체)에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최종보고서 작성 전까지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내용의 결과는 통계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귀 사업체(단체)의 정책지원 수요가 충청북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에 반영되어 우리 지역내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이니 만큼 사업체(단체)의 대표(또는 실무책임자)께서 신중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 자료는 아래 조사담당자에게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 7.

조사기관 : 충북개발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조사담당 : 충북개발연구원 [주소 : (360-76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8]

- 조사담당 : 유호영연구원 (043-220-1180, hrb3756@cri.asia)

- 연구책임 : 함창모박사 (043-220-1117, cmham@cri.asia)

1. 사업체 일반 및 운영 현황

다음은 조사대상 사업체의 일반적 특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한 항목입니다.
해당 항목에 직접 기입 또는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 사업체(단체)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 _____ ① 청주시 _____ ② 충주시 _____ ③ 제천시 _____ ④ 청원군
_____ ⑤ 보은군 _____ ⑥ 옥천군 _____ ⑦ 영동군 _____ ⑧ 진천군
_____ ⑨ 괴산군 _____ ⑩ 증평군 _____ ⑪ 음성군 _____ ⑫ 단양군

2. 귀 사업체의 창업연도는 언제입니까? ()년

3. 귀 사업체의 설립자본금은 얼마입니까? ()만원

4. 귀 사업체의 설립자본금 구성비율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성비율의 합계가 100%가 되도록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구성원 출자 : ()% ② 관련기관(공익) 출자 : ()%
③ 관련개인(공익) 출자 : ()% ④ 외부투자 : ()%
⑤ 차입 : ()% ⑥ 기타 : ()%

5. 귀 사업체 사회적일자리사업의 참여 근로자 현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 참여근로자 수 : 남자 ()명, 여자 ()명

5-2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근로자 수 : ()명

6. 귀 사업체 사회적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취약계층 근로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대상은?

- _____ ① (조건부)수급자 _____ ② 저소득층 _____ ③ 장애인 _____ ④ 고령자

_____ ⑤ 장기실업자 _____ ⑥ 기타(직접기입 : _____)

7. 귀 사회적일자리사업의 사회서비스 제공 현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 전체 서비스 수혜자 규모 : (_____)명

7-2 취약계층 수혜자 규모 : (_____)명

8. 직전연도(2009년 결산)기준 연간수입(총사업비) : (_____)만원

8-1 사업수입(순수매출액) : (_____)만원

8-2 비사업수입(국고보조금, 민간지원금, 후원금 등) : (_____)만원

※ 차입금 또는 차입성 지원금은 비사업수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9. 직전연도(2009년 결산)기준 경영성과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9-1 흑자 또는 적자 여부 : _____ ① 흑자 _____ ② 적자

9-2 당기순이익(손실) : (_____)만원

9-3 인건비 : (_____)만원

10. 직전연도(2009년 결산)기준 재무구조 현황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자산 : (_____)만원 ② 부채 : (_____)만원 ③ 자본 : (_____)만원

※ 부채 및 자본의 합계는 자산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11. 귀 사업체의 설립 모태는 무엇입니까?

_____ ① 개인 _____ ② 정부 _____ ③ 민간기업 _____ ④ 자활후견기관

_____ ⑤ 사회복지기관 _____ ⑥ 시민단체 _____ ⑦ 자활공동체

_____ ⑧ 기타(기입 : _____)

12. 귀 사업체의 사회적일자리 유형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_____ ① 일자리 제공형 _____ ② 사회서비스제공형 _____ ③ 혼합형 _____ ④ 기타형

13. 귀 사업체의 조직형태는 무엇입니까?

- _____ ① 상법상 회사 _____ ② 민법상 법인 _____ ③ 민법상 조합
_____ ④ 기타 비영리법인 및 단체

14. 현재 귀 사업체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주된 업종구분은 무엇입니까

- _____ ①교육 _____ ②보건 _____ ③사회복지 _____ ④환경(재활용포함)
_____ ⑤문화, 예술, 관광, 체육 _____ ⑥보육 _____ ⑦산림보전 및 관리
_____ ⑧간병, 가사지원 _____ ⑨ 제조업
_____ ⑩기타 (직접기업 : _____)

15. 현재 귀 사회적일자리사업의 주요 내용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II. 사회적일자리사업 지원 수혜내용 및 만족도

16. 현재 사회적일자리사업에서 지원받고 있는 지원내용을 적어주십시오.

지원기관	지원내용
정부(고용노동부 등)	
지방자치단체	
일반(연계)기업	
민간단체	

17. 현재 기업이 지원받고 있는 지원자원의 만족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지원 사항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경영지원(경영컨설팅 및 회계프로그램)					
재정지원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등)					
설비비 지원 (부지구입비, 시설비등)					
세제혜택 및 지원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사회적기업가 육성 아카데미 지원					
법적지위 확보를 위한 지원					
기타()					

18. 지원받고 있는 자원이 만족 또는 만족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Ⅲ.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의지 및 계획

19.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____ ① 예(19-1번~19-4번 문항까지 답해주세요.)

____ ② 아니오 (20번 문항만 답해주세요.)

19-1.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 중이라면 어느 기간 내 추진할 예정입니까?

____ ① 6개월 미만 ____ ② 6개월 ~ 1년 미만 ____ ③ 1년 ~ 2년 미만

____ ④ 2년 ~ 3년 미만 ____ ⑤ 3년 이후

19-2.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중이라면 어떤 유형으로 신청할 예정입니까?

____ ①일자리 제공형 ____ ②사회서비스 제공형 ____ ③혼합형 ____ ④기타형

- 일자리 제공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전체 근로자의 30%이상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서비스 수혜자중 취약계층 비율이 30%이상
- 혼합형 : 취약계층 고용과 수혜비율이 각각 20%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9-3.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다면 인증 후 몇 년 이내에 시장에서 완전히 자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____ ① 1년 이내 ____ ② 1년 이상 2년 이내 ____ ③ 2년 이상 3년 이내

____ ④ 3년 이상 4년 이내 ____ ⑤ 4년 이상 5년 이내 ____ ⑥ 5년 이상

____ ⑦ 시장 자립 불가능

19-4.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 ① 기업의 이미지 제고 ___ ② 보다 나은 수익창출
- ___ ③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___ ④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지원기간 종료
- ___ ⑤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___ ⑥ 기타()

20.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 ① 인증 요건이 까다로움 ___ ② 기업운영에 필요한 여건 미비
- ___ ③ 이윤창출에 대한 부담감 ___ ④ 일자리 사업에 대한 각종 지원 중단우려
- ___ ⑤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지원수준이 거의 비슷
- ___ ⑥ 영리활동이나 기업 이미지 등에 크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
- ___ ⑦ 기타 ()

Ⅲ. 사회적기업 전환 저해요인

21. 귀 사회적 일자리사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장애가 되는 저해요인은 무엇입니까? (우선 각각의 저해요인을 모두 평가 해 주시고, 가장 문제가 되는 순위를 선정해 주세요)

저해요인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1) 참여자의 근로능력 부족					
(2) 참여자의 근로의욕 부족					
(3) 운영자금, 투자자금의 부족					
(4) 전문성을 갖춘 기술/운영 인력 부족					
(5) 작업시설 및 설비의 부족					
(6) 까다로운 인증요건					
(7) 창업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의 부족					
(8) 수익 창출구조를 갖춘 일자리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전략 부재					
(9) 기존 시장과 충돌 문제					
(10) 제도 및 법적규제로 인한 활동 제약					

1순위 : ()

2순위 : ()

22. 위 문항에서 제시한 저해요인 외에 기타 요인이 있다면 의견을 적어주세요.

IV. 사회적일자리 사업단에 필요한 지원 수요

23. 현재 사회적일자리사업단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시에 아래와 같이 7가지 정도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지원내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다면 그 필요성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문항	인지여부		필요정도				
	①인지	②불인지	① 매우 불필요	② 불필요	③ 보통	④ 필요	⑤ 매우 필요
(1) 경영지원							
(2) 설비비 지원							
(3) 공공기관 우선구매 촉진							
(4) 세제지원							
(5) 재정지원							
(6)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지원							
(7)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호된 시장 제공							

- (1) 경영지원 : 회계 · 노무관리 · 마케팅 · 홍보 등 전문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시장경쟁력 향상 및 자립유도
- (2) 설비비 지원 : 사회적기업 설립 ·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 · 시설비, 점포임대에 필요한 초기자금을 융자 · 지원
- (3) 공공기관 우선구매 촉진 :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에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해야하는 등 사회적기업에게 보호된 시장을 제공
- (4) 세제지원 :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 연계(민간)기업이 사회적기업에 지출하는 비용은 지정기부금에 포함되어 법인 소득의 5% 범위내에서 전액 손금처리 가능. 사회적기업은 인증 후 4년 간 법인세와 소득세 50% 감면이 가능
- (5) 재정지원 : 사회적기업의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이 사회적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취약계층을 고용할 경우, 근로자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사회복지, 가사 · 간병, 보건 · 의료 등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모 · 심사를 통해 기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예:참여자 관리비, 전문인력인건비)
- (6)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지원 : 사회적 사명감과 경영능력을 갖춘 혁신적인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들과 협의하여 MBA 등 석사과정 또는 비학위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과정 설치 등을 지원
- (7) 사회적 기업에 대한 보호된 시장제공 : 사회적 기업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보다도 수익 창출이 더 중요

24. 현재 귀 사회적일자리사업단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요구분야를
우선순위에 따라 3가지를 골라 적어 주십시오. (기타의 경우 직접 내용을 기입)

- ①사업비지원 ②시설비지원 ③공공기관 우선구매 ④공공기관 사업위탁 ⑤사업체
세제지원 ⑥연계기업 세제지원 ⑦종사자 교육훈련 ⑧전문인력 지원 ⑨인건비 지원
⑩ 운영비 지원 ⑪컨설팅 지원 ⑫지역기업(기관) 연계 ⑬업종별네트워크운영 지원
⑭ 기타(직접기입)

1순위 :

2순위 :

3순위 :

25. 현재 귀 사회적일자리사업단이 인지하고 있는 경영컨설팅 지원의 필요성
정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_____ ① 불필요 _____ ② 부분적 필요 _____ ③ 매우 필요

26. (위 25문항에서 부분적 필요 또는 매우 필요를 선택한 응답자만 답변)
귀 사회적일자리사업단이 가장 필요로 하는 컨설팅 지원 수요 분야 3가지를
우선순위에 따라 적어 주십시오.

- ①마케팅/홍보 ②회계/재정관리 ③노무/교육훈련 ④법무/법률 ⑤비즈니스모델발굴
⑥사업성 분석 ⑦사회적자본 확보 ⑧ 사회적기업 인증 ⑨ 기타(직접기입)

1순위 :

2순위 :

3순위 :

27. 귀 사회적일자리 사업단에서는 다음의 컨설팅 제공방식 중 어느 방식을 선호하는지 체크하여 주십시오. (중복체크 가능)

- ____ ① 컨설팅전문민간기관 ____ ② 사회적기업지원기관 ____ ③ 영리기업
____ ④ 선도사회적기업 ____ ⑤ 업종별네트워크 ____ ⑥ 기타()

28. 현재 귀 사회적일자리사업단이 인지하고 있는 네트워킹의 필요성 정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 ____ ① 불필요 ____ ② 부분적 필요 ____ ③ 매우 필요

29. 귀 사회적일자리사업단에서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네트워킹 분야는 무엇입니까?
(중복체크 가능)

- ____ ① 공동 마케팅/홍보 ____ ② 공동구매 ____ ③ 비즈니스모델 개발
____ ④ 시장분석/판로개척 ____ ⑤ 전문인력 교류 ____ ⑥ 교육훈련/인력양성
____ ⑦ 노무/법무 공동대응 ____ ⑧ 사회적자원 동원 ____ ⑨ 기타()

30. 귀 사회적일자리사업단이 선호하는 네트워킹 형태는 무엇입니까?

- ____ ① 업종별 네트워크 ____ ② 지역별 네트워크 ____ ③ 기타()

31. 귀 사회적일자리사업단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보노(전문봉사자)는 어떤 분야입니까?

- ____ ① 리더십(대표 및 팀장 리더십, 대인관계, 의사소통 기술, 스피치, 멘토링 등)
____ ② 경영전략 및 사업경영 관련(신규사업 개발/기획, 사업계획, 타당성분석 등)
____ ③ 마케팅 및 홍보(고객관리, 광고 및 홍보전략, 디자인, 영업전략, 판촉전략 등)
____ ④ 기술/생산/품질(신제품/신기술 개발, 품질관리, 원가절감, 공정개선 등)

- _____ ⑤ IT (홈페이지 제작/관리, IT전략, 온라인 마케팅, 쇼핑몰 등)
- _____ ⑥ 인사노무/조직(근로계약, 조직혁신, 기업문화, 직무분석, 성과보상 등)
- _____ ⑦ 법무/법률(계약서 작성, 특허 및 지적재산권, 법인설립, 정관 수립 등)
- _____ ⑧ 회계/재무/세무(회계관리, 세무일반, 자금조달 및 투자유치, 재무관리 등)
- _____ ⑨ OA(사무자동화 :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동영상 제작 등)
- _____ ⑩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절차 안내, 인증요건 사전심사, 사업계획 작성 등)
- _____ ⑪ 기타 ()

32. 기타 귀 사회적일자리사업단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적 지원 수요가 있다면 사소한 것이라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원 확대, 사회적기업 전환에 대한 지원 등)

※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BSTRACT

A Study on the Promotion Strategies of Social Enterprise in Chungbuk

Project Number : CRI - 10 - 02
Research Staff : Ham, Chang-Mo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ate and political demand of social enterprises, and to suggest political support plan for promotion of social enterprises in chungbuk. For the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the analysis on the state, competitiveness, political demand survey of social enterprises in chungbuk.

There are 39 social enterprises(18 accredited SE, 21 priliminary SE) in chungbuk area. 952 workers are hired by them. Employment rate of vulnerable population in social enterprises is 53.2%. Despite the political effect of creating jobs in vulnerable population, social enterprises in chungbuk face many challenge and problems. Also, according to the survey analysis, social enterprises in chungbuk want financial support and secure market support(purchase of public institution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local government has to support systematically the find and promotion of social enterprise in local area. This study suggested some political alternatives to vitalize social enterprises as follows.

- expansion of institutional foundations to support social enterprise

- setting of specific vision and goal
- improvement of find and promotion system of priliminary SE
- creation of social enterprise-friendly culture and environment
- strengthen and enhancement of capabilities and specialty
- invigoration of network partnership between agencies in chungbuk

Table of Contents

I. Introduction	3
1. Purpose of This Study	3
2. Contents and Method of This Study	5
II. Theoretical Background	9
1. Emergence Background of Social Enterprise	9
2. Meaning of Social Enterprise	11
3. Social Enterprise Policy in Advanced Country	15
4. Social Enterprise Policy in Korea	20
III. State of Social Enterprise in Chungbuk	29
1. State of Social Enterprise in Korea	29
2. State of Social Enterprise in Chungbuk	33
3. Foundation for Promotion of Social Enterprise	39
4. Analysis on Competitiveness of Social Enterprise	44
IV. Analysis on Political Demand of Social Enterprise	49
1. Outline of Political Demand Survey	49
2. Analysis on Political Demand of Accredited SE	50
3. Analysis on Political Demand of Preliminary SE	59
4. Analysis on Difference of Political Demand between Two	68

V. Conclusion	79
1. Summary of Analysis Results	79
2. Suggestion for promotion of Social Enterprise	84
Reference	90
Appendix	93

기본과제 2010-02

충북지역 사회적기업 현황 및 육성방안

A Study on the Promotion Strategies of Social Enterprise in Chungbuk

발행인 | 정낙형

발행일 | 2010년 12월

발행처 | 충북개발연구원

전화 043-220-1107~8 전송 043-220-1199

360-030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번지(문화동 15)

ISBN | 978-89-6455-014-4 94320

* 본 출판물의 판권은 충북개발연구원에 속합니다.

* 본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